

“한국인권학회” 설립 준비 제 1차 포럼

일시: 2016. 3. 11. (금) 오후 2시- 6시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115호

<프로그램>

제1세션: 한국 인권학의 현황과 과제

- ‘인권 사회학’ 현재와 미래 과제,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인권 정치학’ 현재와 미래 과제,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현대 한국사회 인권학의 과제,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제2세션: 한국인권학회 과제와 역할

- 왜 ‘인권학회’가 필요한가?
- ‘인권학회’의 역할과 과제는?
- ‘인권학회’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 구성하고 싶은 분과가 있다면

- 주관: 한국인권재단,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SSK인권포럼

“한국인권학회” 설립 준비 제 1차 포럼

일시: 2016. 3. 11. (금) 오후 2시- 6시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115호

<프로그램>

제1세션: 한국 인권학의 현황과 과제

- ‘인권 사회학’ 현재와 미래 과제,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인권 정치학’ 현재와 미래 과제,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현대 한국사회 인권학의 과제,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제2세션: 한국인권학회 과제와 역할

- 왜 ‘인권학회’가 필요한가?
- ‘인권학회’의 역할과 과제는?
- ‘인권학회’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 구성하고 싶은 분과가 있다면

- 주관: 한국인권재단,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SSK인권포럼

한국 인권 학회의 출범을 격려하는 글

박 경 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저는 지난 30년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부터 이성훈 인권재단 대표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WCC 아시아 국장으로 일할 때, 이 대표는 가톨릭 <팍스 로마나>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2000년 인권재단의 제주모임에서 제가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발제 세분의 글 그리고 토론자들의 글을 읽고 “그래 현실은 퇴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젊은 석학들이 있으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몇 가지 나름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서구의 이론을 위한 담론분석이나 이를 인용하여 억지로 한국의 현안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나라처럼 미국 일변도의 학문의 오염이 정돈되지 않고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는 또 하나의 필요 없는 이론만 첨가해 더 큰 혼란만 야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대중은 인권에서 멀어지거나 개인 차원에서 이기적으로 해석하여, 공동체를 무너트리는 현실을 교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최근 저는 한국사회에서는 인권의 궁극적 목표가 전 국민을 정직한 국민으로 즉, 거짓말 안하는 국민으로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모임이 되자는 뜻입니다. 인권이 대학의 강단에서 이론정립 단계에 머물러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5000만, 2400만 남북의 총 7400만의 국민의 일상생활에 내면화 되어 실천화되어야 인권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멋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인권의 생활화”, “인권의 내면화”를 강조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유럽의 폐허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가 세운 OECD는 유럽 경제 발전시기까지 포함하여 근 70년 역사에서 선진국 진입의 가이드라인 세 가지

를 회원국 심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1)Stronger 2)Cleaner 3)Fairer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은 합격인데 2, 3은 꿀찌 아닙니까? 이 셋이 전부 인권을 기저에 깔고 적용됩니다. 이 모임의 한 발은 선진국, 또 한발은 후진국인 우리나라의 어정쩡한 자화상을 교정하므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제시합시다.

셋째, 저도 학자라면 학자인데 그 많은 한국의 학회에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회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학회들의 목적 전도 현상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회가 필요 없는 이론전개를 외국의 학자들것을 인용해서 한국현실에서 특히 일반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추론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도 이중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모임의 주축이신 여러 젊은 학자들이 북한 인권 이슈로 꾸준하게 만난 전통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즉 지난 2년 반 동안 인권재단이 주관하여 북한 인권의 무리 없는 담론을 현실에 맞게 도출하여 적용하려는 포괄적 선순환의 접근을 성공시킨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살려 나가면서 한국 인권의 현안문제인, 예를 들어, 사형제도, 국가 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다문화 가정의 벼려진 2세들, 성적 소수자, 북한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문제들을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접근하여 국민에게 방향도 제시합시다.

마지막으로 요즘 저는 한국 민화들을 분석하고 우리 전통의 민화 속에서 조상들이 500년 전에 이미 누렸던 우리식의 인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식량권, 건강권, 사회권, 행복권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우리식 인권 만들기도 시도해 봅시다. 서구식 권리중심의 강조가 개인의 인권만 강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것이 종국에는 공동체의 행복권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 보자는 뜻입니다. 인권은 법의 테두리를 맴돌다가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계몽시켜야겠습니다. 국제 기준과 한국법의 괴리를 막는 작업도 하십시오.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권학회” 준비 제1차 포럼

고려대, 2016년 3월 11(금) 오후 2-6시

배경

- 2016년 1월 22일 오찬 모임에서, 박경서 (동국대 다르마 칼리지),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학과),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유남영 (법무법인 KCL, 변호사), 이성훈 (경희대 공공대학원,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유영수 (고려대 국제대학원)은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논의해온 “한국인권학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데 의견을 모음.
- 구체적으로 3월 11일 오후 고려대에서 첫 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한국인권학회”의 필요성과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함.

“한국인권학회” 추진 배경과 취지

- 국내외적으로 인권이 확산되면서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권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권을 둘러싼 혼란과 ‘이념화’ 또는 ‘정치화’도 가속화되고 있음.
- 동시에 인권이슈의 증대와 인권운동의 확산에 따른 인권운동의 ‘이론화’에 대한 요구 증대
- 개별적으로 학문분과 내에서 수행해온 인권연구와 담론 작업을 총화하고 생산적 논쟁과 함께 학제간 시너지 제고 필요성 증대
- 현장의 인권운동가와 정책담당자, 이론연구가의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통해 실질적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생산적 인권담론 활성화.
- 2014년 법학전공자 중심의 인권법학회 출범에 발 맞추어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인권학자의 플랫폼 구성을 통해 인권 관련 학회와 모임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계기 조성
- 국제적 인권 담론과 국내의 논의를 연계하여 교류 확대 및 심화 필요성 증대

"한국인권학회" 준비 제1차 포럼
고려대, 2016년 3월 11(금) 오후 2-6시

프로그램 (안)

시간	프로그램 및 의제
1:30- 2:00	등록
2:00-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인사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고려대 인권센터 소장) ➤ 격려사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 <p>배경 및 프로그램 소개 참가자 소개</p>
2:30- 3:30	<p>제1세션 : 한국 '인권학'의 현황과 과제</p> <p>사회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발표 (각 2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사회학' 현재와 미래 과제,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인권 정치학' 현재와 미래 과제,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 현대 한국사회 인권학의 과제,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3:30- 3:45	휴식
3:45- 5:00	<p>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영수 (고려대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5:00- 5:10	휴식
5:10- 6:00	<p>제2세션 : '한국인권학회' 과제와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인권학회'가 필요한가? - '인권학회'의 역할과 과제는? - '인권학회'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 구성하고 싶은 분과가 있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혜수 (KOCUN 상임대표,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전원 교수) ➤ 송지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6:30- 8:00	만찬

인권사회학의 형성과 발전

2016년 3월 11일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I. 인권사회학의 개념

인권(human rights)은 사회학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인권은 규범적 가치로 인식되고 그 실현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철학과 국제인권법을 통한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팔목할 만하다. 사회학의 전통적인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인권운동, 인권단체 및 주요 행위자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권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여성, 소수자, 빈곤, 노인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인권 이슈도 중요한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초국적 기업, 인권과 개발, 국제인권거버넌스와 같은 주제들도 점점 더 중요한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사회학에서 인권연구가 더디게 발전했던 이유를 살펴보고, 인권연구에서 사회학적 접근이 시도된 맥락과 인권사회학적 접근이 기존의 다른 학문에서의 인권연구에 비해 가지는 장점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권사회학에서 넓힐 지평과 그것이 인권연구 전반에 기여할 가능성을 논의해 보았다.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권사회학’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할 것 같다. 사회학은 서구에서 근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성립된 신생학문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구체제의 신분질서로는 새로운 사회의 계급상황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이러한 계급 체제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학문적 과제도 새롭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중세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이성(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과제를 풀어갈 학문의 설립을 밀받침했다. 이 시기에 같은 사회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권(human rights)’ 개념이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새롭게 자유로운 시민으로 등장한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 주창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학과 인권은 근대사회의 쌍생아와 같다.

따지고 보면 사회학에 인권의 개념은 성립기부터 내재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인간의 이성과 사회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 공통의 기반이었고, 사회학 설립의 목적은 이러한 이성에 기반하여 보다 진보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규범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과학이 물질적 세계의 법칙을 규명하여 기술의 진보를 가져오듯이, 사회변동의 법칙을 규명하여 사회의 진보를 이끈다는 규범적 목적이 성립기 사회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¹⁾ 사회학은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 빈곤, 소수자 문제와 다국적 기업, 노동계급, 제3세계, 다문화 연구 등 인권연구의 주요 대상에 관하여 사회과학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연구를 이끌어 온 학문이다. 이미 사회학은 인권연구의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사회학은 애써 외면해온 것 같아 보인다. 인권은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정의된다. 고대, 중세시기에도 권리 개념은 있었으나, 이러한 ‘자연권’으로서의 인권개념은 근대에 들어 일련의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의 진화의 결과로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²⁾ 이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라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은 세계가 두 차례의 큰 전쟁과 대량살육을 경험하면서 실체적 개념으로 명문화되기 시작했다. 유엔헌장과 보편적 인권선언,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규약, 여성차별철폐규약 등 여러 규약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법에서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있는 이 인권 개념을 사회학 연구에서 받아들이고 하나의 변수로서 분석하며 그것을 다른 사회학적 변수들과 연관시키면서 학문적 영역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한국사회학회에서 <인권사회학> 단행본³⁾을 준비하면서 필진이 되어 함께 연구한 사회학자들은 국제사회에서 정립되어온 ‘인권’ 개념을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규범적으로 접근하거나 질적, 계량적으로 다른 사회적 조건들과 연관하여 분석하거나, 또는 사회구성적으로 해체하는 다양한 연구들

1) 콩트, 뒤르켐, 베버, 마르크스 등 대표적인 고전사회학자들은 사회변동의 단계를 규정하고 어떠한 기제들이 이러한 변화를 촉동했는가에 대해 연구했다. 이 학자들에게 있어서 사회는 진보한다고 하는 믿음은 확고했으며, 사회학 연구는 실증주의와 가치자유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위한 노력이라는 규범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회발전론의 연구 흐름은 1960년대 근대화론과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등 제3세계 사회발전론으로 이어졌다. 1980대 말 이후 사회발전론의 맥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저개발국의 발전을 어떻게 이론적·실천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규범적 문제의식은 여전히 절실히 보여지며, 이 문제의식은 인권사회학의 한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인권의 정의와 자연권에 관해서는 프리먼(2004) 제1장과 2장을 참조할 것.

3) 정진성 외 <인권사회학> (다산, 2013)

을 인권사회학이라고 규정한다. 한국에도 개화기부터 인권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권위주의정부에서도 인권이 통치에 활용되었고, 법학에서 국제인권법이 대학 교육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었으나, 사회학에서 연구·교육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여러 인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받아들여 사용한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미국사회학회에서 2010년에야 인권사회학 분과가 설립되었는데, 한국사회학회에는 그보다 1년 전인 2009년에 ‘글로벌 리제이션과 인권’ 세션이 만들어진 사실은 사회학에서 후발분야인 인권사회학이 한국사회학자들에 의해 선도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게 한다.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본격적인 인권연구가 질적, 계량적, 역사적 방법을 사용하여 차츰 확대되고 있다. 인권사회학은 이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사회학 성립기부터의 사회진보의 문제의식과 비옥한 인권적 토양에 기초하여 그리고 이후의 인간주의사회학, 공공사회학 등의 강력한 실천적인 문제의식과 관련을 맺으면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II. 인권연구의 학제적 성격과 사회학적 접근의 중요성

1. 인권연구의 학제적 성격

현대사회에서 ‘인권(human rights)’은 점점 더 비중있게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잡고 국가정책과 국제관계에도 핵심적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인권이 사람들의思考로부터 사회집단 간의 역학, 국가 간 관계에 이르는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여러 분과학문에서 접근하는 대표적인 다학문적 주제이다. 철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에서 인권의 다각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철학이 인권의 인식론적, 규범적 측면에 대한 논의라고 한다면, 법학은 인권이라는 규범이 현실사회에서 실행(implementation)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어떠한 인권의 규범에 광범위하게 동의하면서 그것을 규약 등의 형태로 만들고 사람들이 준수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인권 침해의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과 규율은 국제기구가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인권법은 대체로 국제인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된 2차대전 이후에도 인권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법학 분야에서 전개되어 왔다. 법학은 국민국가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국제법의 특성과 위치를 연구하고 초국적 법질서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한다 (조효제, 2007). 법의 성격이 인권의 실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인권연구에서도 법학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리먼, 2005). 이와같이 인권개념이 법을 통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인권담론은 기술적이며 법률적인 성격이 점차 강해졌다. 향후 국제인권법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각 나라에서 국내법에 반영될 것인가가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확산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철학과 법학이 주도했던 인권이 1970년대 중반 이후 국제관계의 중요한 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정치학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정치학은 비교관점에서 각 국가들에서 인권의 발전과 정치발전, 경제발전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정치사회학자와 사회운동 연구자들이 이에 협력하여 인권연구를 크게 발전시켰다. 이후 사회학은 사회구성주의와 구조주의, 담론연구 등 다각적으로 인권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심리학과 인류학도 사람들의 인권적 태도와 문화의 관점에서 인권을 연구하고 최근 사회복지학에서도 인권의 관점을 중요하게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인권을 연구하는 동안 사회학의 인권연구는 다소 지체되었다. 그것은 사회학 설립 초기부터 나타났던 실증주의의 영향, 개인보다 사회구조를 중시 여기는 전통, 가치자유의 입장 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후술할 바와 같이, 이러한 초기 사회학의 경향에는 인권 개념도 한편에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후에 인권사회학 발전의 기초를 이루었다. 그보다는 사회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치중되었던 과도한 이론적, 방법론적 추상성으로 인하여 규범성과 유연성을 잃어버린(Mills)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과정에서 불거진 미국의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및 인종주의, 문화상대주의와 자주권 강조, 경제사회적 권리에 대한 시민적 권리의 우위 주장과 같은 역사적 장애물도 인권사회학의 발전을 가로 막았다.(Somers & Roberts, 2008)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인권개념의 정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인권사회학의 정립을 막는 요인이 되었다.(Deflem & Chicoine, 2011)

2. 인권연구에서 사회학적 접근의 중요성

이렇게 사회학은 인권연구에 다소 늦게 합류했지만, 법실증주의와 철학의 추상적 논의를 연결지으며, 다른 한편 정치학에서 더 나아간 이론적, 실증적 분석과 사회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 대한 분석을 넓힘으로서 인권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 몇가지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구조적/종합적 분석

사회학의 중요한 전통은 사회를 개인의 합, 그 이상으로 보는 것이다. Connell(1995)은 사회학의 종합적(holistic) 접근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인권 연구를 주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Deflem et.al, 2011:103-104)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고 사회적인 것을 설명하고자 한 사회학의 전통은 개인의 권리로 돌아가는 인권 개념에 대해 거리를 두게 한 것이다(Somers, 2008:386). 마르크스는 인권이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근원적 구조적 조건을 감추는 것이라 비판하며 이것이 자유권의 한계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구조적/종합적 분석으로서만 보다 실체에 가까운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이란 철학적 개념과 실정법, 국가행위 또는 개인의 권리 그 각각의 하나만으로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 부분들을 사회학적 접근으로 종합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구조, 문화, 사회관계 등의 개념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때, 인권의총체적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사회학은 기존의 여러 학문분야의 인권연구를 종합하여 구조화하는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

또한 이러한 사회학의 접근은 인권 개념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이나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 속에서 실현되고 증진되는 방식에 대하여 중요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권연구에서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인권이 침해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있다. 인권연구의 대부분을 점하는 법실증주의적 접근법은 법률로 집행가능한 권리만을 권리로 받아들여지게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인권을 보다 실현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집행가능하지 않는 자연적 권리로서의 인권개념

4) Alvin Gouldner는 사회학을 기준의 (n개의) 여러 학문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n+1 학문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인권이 법률로 집행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인권을 호소할 필요가 없다 (프리먼, 2005).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으로 출발한 인권의 법제화는 각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시켰으며 개별국가의 주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법의 규범과 실제 적용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크며, 법적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문제해결은 사회전반의 인권상황 개선에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회학적 접근은 인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인권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Feyter,2011).

인권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특정한 사회.정치적 맥락이라는 경험적 상황에 적용하는데 사회학적 접근은 탁월하다. 예컨대 인권의 중요한 주제인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역사적 특수성 논쟁은 서구가 그들의 인권항목을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인간 행위자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사고하며 다양한 타자의 역할을 배우고 타인을 이해하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사회학의 오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Sjoberg,2001)

이와 관련하여 시민적.법적.정치적 권리에 비해 저평가되어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중요하게 부상시키고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사회학의 역할이다.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뿐 아니라 빈곤, 건강, 교육, 토착언어 사용 등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전반적인 인권증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부패, 국제 이주, 인신매매, 국제협력과 개발, 다국적 기업 활동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 인권침해/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⁵⁾ 이러한 연구들이 법리적 분석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학, 인류학의 통찰과 분석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인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⁶⁾

5)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인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20개 연구주제 중 대다수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해당한다. 예컨대 주거권, 문화적 권리, 교육, 종교, 건강, 선주민, 이주민, 실향민, 인종차별, 노예제, 유해쓰레기 문제, 인신매매 등.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Themes.aspx>)

6) 한가지 예로, 2009년 정부대표로 구성된 인권이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개념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는데, 국가 간에 매우 입장이 노출되었다. 그것은 서구 중심의 개인주의적 인권개념이 비서구 지역의 전통적 가치를 폄하한다는 주장과, 보편적 인권을 해치는 전통적 가치와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충돌로 요약되었다. 인권이사회는 이 풀기 어려운 난제를 독립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게 심층연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학적 관점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사회학자가 중심이 되어 성공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A/HRC/22/71)

2) 국가 중심 인권연구의 탈피: 비국가행위자의 중요성

사회의 중요성과 연관되는 점으로, 사회학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의 인권적 책임에 대한 분석의 길을 열고 있다. 현재 국제인권법에서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지만,⁷⁾ 여전히 주요 행위자는 국가이다. 코카콜라와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과 국제적십자사, 앤네스티인터내셔널과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국제NGO, 알카에다나 국제범죄집단과 같은 비국가 폭력집단, 여러 나라에 조직을 가진 종교집단 등과 같이 국가로 귀속될 수 없는 집단이나 그에 속한 개인들이 인권침해/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의 주체인 기준의 주요 국제인권법에서 이들의 행위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 예컨대 어떠한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인권침해를 한 경우, 현재의 국제인권법체계에서는 그 기업의 본사가 있는 나라의 정부에게 해당 기업의 침해 행위를 시정하고 보상하는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견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지만, 정부주도의 법체계를 뚫고 나가기는 힘들었다.⁸⁾ 그러나 국제인권법연구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점차 진전되고 있으며, 여기에 일찍부터 발전되어 온 사회학의 다국적 기업 연구가 중요한 기여를 했음이 틀림없다.⁹⁾ 주지하는대로 1970년대부터 사회학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국제노동이주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주요 비국가행위자인 국제NGO의 인권증진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기존의 어떤 학문분야보다도 사회학이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뒤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사회학에는 사회운동연구의 오랜 전통이 있고,

7) Andrew Clapham, *Human Rights Obligations of Non-State Acto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and Philip Alston (ed.), *Non-State Actors and Human Righ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등.

8) 유엔 인권소위원회(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적 책임을 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 수행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하는 가이드라인("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es enterprises shall be subject to periodic monitoring by national, international, governmental, and/or nongovernmental mechanisms regarding thei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을 만들었으나, 상위 기관이며 정부기구인 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Human Rights Principles and Responsibilities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U.N. Doc. E/CN.4/Sub.2/2002/XX). 이것은 다국적기업의 대부분이 속한 선진국들의 반대 때문이지만, 정부가 법적 책임의 주체라는 법논리를 뚫고 나가지 못한 것이다.

9) "Bilateral and multilateral economic agreements and their impact on human rights of the beneficiaries," Working paper submitted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Florizelle O'Connor).(A/HRC/Sub.1/58/CRP.8)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운동의 초국화(transnationalization) 현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왔다. 오늘날 세계의 인권증진에 있어서 국제NGO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인권연구에서 사회학적 접근은 점차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차원의 인권 상황과 그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의식과 태도)-시민사회-국가-국제인권레짐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회학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의 인권의식이 국가의 국제인권 레짐 참여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던가, 국제인권레짐 형성에 있어서 국제NGO(시민사회)의 역할, 국가의 경제 또는 민주화의 정도와 국제레짐 참여와의 관계 등등, 이론 뿐아니라 인권증진에 대한 실천적 함의가 큰 연구들이 사회학의 주도로 발전될 수 있다.

3) 실증주의적 접근의 가능성

사회학은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태동했고, 정치철학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권리개념과 가치판단의 문제는 연구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프리먼, 2005). 따라서 대부분의 고전사회 이론가들은 인권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인권의 법률적 도덕적 성격이 당시 사회학 연구의 조류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이 왜 자연적 권리인가를 증명 할 수 없으며, 보편적 인권이라는 추상성도 사회학에서 인권을 다루지 않게 한 이유이다. 뒤르켐은 법과 권리를 사회적 사실로 보고 그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베버도 근대법을 합리화된 체계로 보고 보편적으로 유효한 규범적 기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Deflem et.al, 2011:103).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법학과 전통적 정치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적인 시사점을 사회학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Cushman, 2012:1), 바로 이러한 실증주의적 접근은 인권을 측정가능하도록 지수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에 따라 광범위한 국가간 비교연구를 이끌어서 세계 인권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소머스와 로버츠(Somers & Roberts)는 사회학이 개념적·철학적 근본주의와 경험적·설명적 실증주의, 그리고 보편적 자연권과 특정한 시민권의 관계 사이를 탐색할 수 있다고 본다(Somers & Roberts, 2008:388). 이것은 Mills 등이 비판했던 기계적이고 경직된 실증주의가 아니라 성찰적이면서 열린 실증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사회학이 인권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점점 더 사회정의, 평등과 같은 가치가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중요하게 포함되는 과정에서 사회학적 인권연구의 지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III. 인권연구의 사회학적 토양

이렇게 인권연구에 있어서 다른 학문에 비해 중요한 접근방법 가지고 있는 사회학은 199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인권연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인권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연구의 전통을 키워왔다. 이것은 인권연구의 토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 법과 권리연구

사회학은 법과 권리에 대한 연구의 오랜 전통이 있다. 최근 인권사회학 발전의 주창자 중 한 사람인 Deflem은 뒤르켐의 도덕과 권리에 관한 연구를 인권사회학이라고 해석한다. 뒤르켐은 현대 유기적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재산에 대한 범죄는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도덕성에 대한 훼손으로 강한 제재를 받는다고 지적하고, 이 사적 재산권의 진화와 성격을 계약과 계약법의 사회학적 이론의 기초로서 분석했다 (Deflem).

현대 사회학에서도 이러한 고전사회학의 문제의식은 간간히 이어져 왔다. 틸리는 시민권의 형성은 정치투쟁과 전쟁수단에 대한 거래, 유럽에서의 대규모 군대의 창설로부터 출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국 사회학자 T.H.Marshall은 1948년 보편적 인권선언(UDHR)이 이루어진 직후, 시민권(citizenship rights)이 역사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로 발전하면서 형성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법적 권리에 더해 사회적 불평등과 생존권(rights to livelihood), 사회적 포용성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권리 담지자를 국가의 권리 남용 뿐 아니라 시장권력의 위협도 받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 정의하고, 사회적 포용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무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1980년대초 하버마스는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개인적 권리(자유)와 사회적 권리(평등) 발전에 기초를 놓았다. (Deflem & Chicoine, 2010: 107-110; Somers & Roberts, 2008:395; Somers & Roberts, 2008)

2. 사회운동론의 발전

어떻게 사회발전을 성취하는가의 한 방법으로 마르크스는 사회구성원에

의한 사회운동을 제시했다. 계급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운동의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후 여러 시각의 사회운동 연구는 현대사회학에 이르기까지 사회학의 중요한 부분을 점해왔다. 1970년대 이후 신사회운동의 양상에 대한 연구와, 1990년대 이후 초국적 사회운동의 새로운 형태에까지 사회학연구는 사회운동의 이론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사회학이 다른 어떤 사회과학보다도 이론화, 또는 일반화를 지향해온 경향은 사회학이 이렇게 권리 획득을 위한 사회운동에 대하여 연구를 지속해 왔으면서도, 점차 초국적으로(transnationalize) 되어가는 인권운동의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이론화를 시도하느라 적극적인 연구의 실행을 지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구체적인 인권운동 사례연구들을 축적하여 초국적 인권운동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규범/실천의 사회학: 비판사회학, 인간주의 사회학,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 사회의 질 (social quality)

마르크스의 이론과 실천의 결합의 사상 이후, 실천을 강조한 사회학의 전통도 이어져 왔다. C.Wright Mills(1959)는 사회학자들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들어라 양키들아”와 같은 격한 사회실천적 저술도 하여, 미국 학생운동의 멘토 역할도 한 바 있다. Peter Berger(1963)는 사회학자들이 교도소와 같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Peter Berger의 인간주의 사회학은 1960-70년대에 사회학계에 중요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한국사회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위 실증주의/인간주의 사회학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사회적 소외 등 인간주의 사회학의 여러 연구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Gouldner(1970)와 Habermas(1971,1974)와 같은 비판적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이 점점 더 검증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도구적이고 기계적으로 되어가는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 Wallerstein(1983)은 인간 사회의 본질과 방향을 논의하면서 보다 나은 인간의 조건을 만드는 사회구조(arrangement)에 대해 고민한 바 있다.

1980년대 말에 처음 쓰였다가 2004년 Michael Burawoy가 미국사회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확산시킨 공공사회학의 개념은 상아탑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학을 일컫는다.(Public sociology 책) 공공사회학자들은 불평등, 인종문제, 젠더, 환경문제, 다문화, 국가폭력, 비국가행위자의 폭력 등의 문제들을 연구하여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스스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문제들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공공사회학을 정의한다.(Deflem,2007) 이러한 규범적·실천적 성격이 강한 공공사회학은 곧 인권사회학과 동일시될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사회학의 가치자유적 입장은 점차 유연해지기 시작했다. 사회정의(justics)는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그와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와 통합, 역량화 (empowerment) 등이 사회변동의 가치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제 이주 증대의 결과로서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유럽에서 제기되어 아시아, 한국사회학에서 까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연구는 그 중요한 예다. 사회의 질 연구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 Amartya Sen), 평등한 근대화 (egalitarian modernization, Diamond,2006:177-181) 등 일련의 가치지향적 사회이론의 발전 선상에 놓여 있다. 위험사회, 성찰적 근대화 등 현대사회에 대한 가치함유적 논의가 사회학에 확산되고 있다.

4. 불평등, 소수자에 대한 연구

계층/계급과 불평등, 차별, 소수자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성차, 불평등에 관한 연구인 젠더연구가 사회학 연구에서 시작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주민의 급증과 성소수자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불평등은 전세계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새롭게 발전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수천명의 사회학자들이 참여하는 2013년 미국사회학의 주제가 불평등¹⁰⁾이었던 것도 이를 말해준다. 인종적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문제도 사회학의 오래된 주제였으며, 이주민, 성적 소수자 등의 새롭게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소수자 문제에 사회학적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IV. 인권사회학의 발전과 그 배경

이렇게 이미 사회학 연구에서 인권사회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진전되어 왔고, 이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 그 자체가 연구의 주요 변수가 되는 사회학 연구들이 새롭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인권은 차츰 충분히 의미있는 하나의 사회적 변수로서-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환경으로서, 또는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는

10) “Interrogating Inequality” 오늘날 사회의 불평등, 그 다양한 형태, 불평등을 야기하는 메커니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등.

국내적 변수로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토양과 접근의 강점을 가지고 사회학은 199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인권연구를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양상과 계기를 짚어보자.

1. 1990년대 이후 인권사회학의 발전

여러 학문분야의 인권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1990년대 들어 사회학적 연구는 사회학의 독특한 종합적인 이론적 접근방식과 실증주의적 엄정성 때문에 인권연구에 강력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사회학의 오래된 또 다른 전통에서 영감을 지원 받으면서 인권연구를 새로운 지평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철학과 법학의 연구를 통합하여 전체 사회적 현상인 인권규범의 확산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며, 대체로 국가 수준에 머무는 정치학적 비교연구에서 개인과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초국적 인권운동으로 연결되는 메카니즘을 밝히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같이 개인-국가-국제레짐의 분절된 시각으로부터 세계화 맥락에서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권을 접근하는 것이 사회학적 연구의 새로운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이민자 및 난민을 포함한 새로운 시민사회 개념, 기업 조직에 대한 인권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접근, 결혼이민의 인권적 접근 등등 새로운 인권개념과 이론을 제시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¹¹⁾

이미 1980년대 들어 주요 사회학 저널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들면 그 수가 더욱 많아진다. “사회학은 보편적 권리와 의무의 사회적 존재의 가능성에 대하여 역사적, 비교적 이유로 매우 회의적이다” (Turner, 1993:489-90)라고 대표적인 인권사회학자인 Turner가 인권사회학에 대한 의지를 비판적 관점에서 제기한 것은, 사실상 인권사회학 연구가 사회학의 곳곳에서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2003년 이후 미국 주요 사회학 저널에 “human rights” 가 주요어로 검색되기 시작한 후, 학회 발표논문과 학회지 출판 논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11) 철학, 법학 등 여러 분과학문의 인권연구에 관해서는 마이클 프리먼(2004)의 제5장을 참조할 것.

<표1> 한국과 미국·영국에서 인권사회학 논문 발표 및 출판¹²⁾

	90년대	2000-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한국발표	1	0	2	0	1	1	1	4	2	6	7	25
한국논문	0	1	0	2	0	1	1	1	1	1	1	9
미국논문	1	2	2	4	4	3	1	2	0	1	1	21
미국발표 ('03이후)	-	3	13	9	9	4	8	18	22	21	15	122
영국논문	0	0	0	0	1	1	0	0	1	0	2	5

흥미로운 것은 이전에 대체로 서양 사회학의 영향을 받아 한국사회학이 발전했던 것에 비해, 인권사회학 연구는 한국에서 법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와 인권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선진적으로 연구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에 미국사회학에 인권섹션이 설립되어 인권연구를 확대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사회학회에는 2009년에 ‘글로벌리제이션과 인권’이라는 독립세션이 만들어졌고, 2012년에는 인권사회학회가 설립되는 제도적 진보를 이루었다. 영미권에서는 2011년(영국)과 2013년(미국)에 인권Handbook이 출판되어¹³⁾ 본격적인 인권연구의 신호를 올렸다.

2. 인권사회학 발전의 사회적 배경

인권사회학이 부흥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서 세계화와 시민운동의 성장을 비롯한 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여러 학문 분야의 인권연구 확산에 주목할 수 있다.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

1990년 들어서 규모와 속도, 영향력에서 유례없는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심화되기 시작했다. 근대 민족국가와 밀접

12) * 기준: 제목에 인권(human rights)이 포함된 연구논문

- 한국발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 한국논문: 한국사회학, 경제와사회, 사회와 역사

- 미국논문: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Social Forces, Sociological forum, Social problems, Annual review of sociology

- 미국발표: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 영국논문: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13) Handbook of Human Rights, Edited by Thomas Cushman (Published 8th September 2011 by Routledge
- 744 pages. Series: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s)
(<http://www.routledge.com/books/details/9780415480239/>)

Handbook of Sociology and Human Rights (Edited by David L. Brunsma, Keri E. Iyall Smith, Brian K. Gran. Publish date: February 2013)
(<http://www.paradigmPublishers.com/books/BookDetail.aspx?productID=298828>)

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시민권 개념은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넘나들며 일어나는 현상들, 즉 국가조직의 변화, 정치적 이슈의 세계화, 가족생활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대한 설명틀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이 민족국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시민권 개념이 인권 개념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은 시민권의 연대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보다 보편적이고 동시대적이며 진보적인 성격을 갖는다. 인권의 제도화과정은 세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으로 일종의 사회화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Turner,1993).

2)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성장

초국적 사회운동(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형태로 확산되었다. 미국에서 노예제 폐지운동과 흑인민권운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인권운동은 여러 차원의 반차별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제3세계 국가들의 민주화운동도 인권운동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까지의 민주화운동이 1990년대 들어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지원운동, 장애인운동 등의 여러 형태의 인권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운동들은 다른 나라들의 운동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이제는 대표적인 초국적 사회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중에 국제NGO의 발전은 특할 만하다. 가장 오래된 국제NGO인 국제적십자사는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강제실종 등의 국제적 차원의 인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과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의 양대 국제NGO는 인권운동을 끌어올린 공신자들이다. 이러한 초국적 인권운동과 국제NGO들은 사회학적 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등장했다. 초국적 사회운동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이 사회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여러 사례들이 집중 분석되어 축적되었다.¹⁴⁾

3) 인권레짐의 발전과 인권지표.지수의 개발

유엔의 설립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중요한 계기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특히 나치에 의한 대량살戮을 지켜보면서 세계는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유엔이다.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가 설립되고,¹⁵⁾ 곧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14)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공석기(2013)을 참조할 것.

15) 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로 설립되었는데, 2006년에 지위가 격상되어준상설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개편되었다. 인권이사회의 주요 메카니즘이 국가별/주체별 특별보고관제도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나라와 심각

등의 조약기구가 설립되어¹⁶⁾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인권규범과 인권메카니즘이 작동되기 시작한 것이다.¹⁷⁾ 이러한 유엔 인권기구는 국제NGO를 비롯한 시민사회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포럼이 되기도 한다.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인권규범이 축적되는 한편, 인권 자체의 국제화도 진행되었다. 다국적기업, 이주, 과거청산, 대량학살 등, 한 국가 내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는 인권 이슈가 대두되었으며, 문제해결이 한 국가 내에서 실현되기 힘든 문화적 맥락의 인권이슈 (여성할례, 불가촉천민 문제 등)가 사회학적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계량화가 진전된 것도 사회학의 기여를 촉진시켰다. UNDP등에서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미국정부와 국제인권단체, 학자들도 여러 인권지표.지수를 개발하고 세계 각국에서 지표의 수치를 측정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미국이 대외원조를 늘리면서 인권과 원조의 연계에 주목한 것이 인권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이 시작되었다. 미국무부는 인권연례보고서를 출판하고 국제NGO인 앤네스티인터내셔널도 전 세계 국가들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하기 시작했다. 이어 Freedom House와 개별 학자들의 지표개발 노력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Humana와 같은 학자는 1980년대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종합적인 지표 개발을 시도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특화하여 지표개발을 시도한 UNDP가 1990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발표했고, 이어 1995년에 젠더발전지수, 젠더권능척도와 1997년 인간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를 발표했다.¹⁸⁾ 이밖에 수많은 국제기구, 연구소들에서 다양한 지표.지수가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지표.지수들을 기반으로 하여 계량적 인권 사회학 방법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한 인권침해 주제에 대하여 집중 조사.연구하고 정부에 시정 권고를 한다. 인권이사회의 한 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는 매4년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점검한다. 인권소위원회는 인권이사회 산하 자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6) 조약기구에는 유엔 회원국가라도 별도로 다시 가입을 하고 매 3-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받는다. 이러한 검토위원회를 가동하는 조약기구가 1966년에 설립된 위 두 개 외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장애인차별철폐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등이 이어 속속 설립되었다. 한국은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와 강제실종협약을 제외한 다른 조약에 모두 가입해 있다.

17) 인권레짐에 관해서는 김두년(2013)을 참조할 것.

18) 인권지표.지수에 관해서는 정진성,공석기,구정우, 2010: 2-1,2장을 참조할 것.

4) 인권의제의 중요성과 타 학문분야의 연구

이러한 인권상황의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권논의 내부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국제인권법만으로 인권실현이 힘들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국제인권규범이 국내 차원에서 실천되는 것인데,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실천이 어떻게 사회에 따라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회학적 연구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은 사회학에서 더 이상 기피 주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인권은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의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잡았으며(Freeman,2002:51), 사회학의 주요 연구 주제였던 불평등, 여성, 소수집단, 배제 등의 사회적 현상은 인권개념없이 논의하기 힘들어졌다. 세계사회에서 유엔과 인권단체의 영향력 증대로 사회운동 연구 중심으로 인권사회학의 발전을 자극했다.

사회과학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성평등이라는 가치지향을 확실한 학문의 입장으로 천명했던 여성학에서도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인권의 문제로 위치짓기 시작했으며,¹⁹⁾ 국제법이 이끌던 인권연구가 정치학, 인류학 등 사회과학 학문분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회학은 더 이상 실증주의와 이론화에 묶여 인권을 등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 한국 인권사회학의 형성과 그 배경

한국사회학에서 인권과 관련된 연구는 일찍부터 있었지만, 명확하게 ‘인권’ 개념을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한상진이 서구 인권이론을 소개한 데서(1996, 1998) 처음 발견된다. 사회학이론을 연구하던 한상진의 인권사회학 연구는 현대사회학이론이 자연스럽게 보다 깊이 있는 근대성과 성찰의 이론인 인권사회학으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다분히 사회학이론연구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서구 인권이론의 소개에서 시작된 이론적 연구는 유교와 같은 동양사상에서 인권의 뿌리를 찾는 연구로 이어졌다.

서구 인권연구의 영향에 의해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한편에서, 정진성(1996, 2000, 2010), 조효제(2007, 2008), 정근식(2004) 등 인권운동에 깊이

19)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이라는 슬로건 아래 입장이 서로 달랐던 여러 페미니즘 그룹들이 모인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참여했던 학자들에 의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회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연구가 발전되기 시작했다. 주지하는대로 1990년대부터 한국사회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본군위안부문제, 광주민주화항쟁 재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등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사회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구 인권연구의 영향과 한국 인권상황의 전개가 배경이 되어 몇몇 학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권연구가 개척된 것은 한국사회학의 인권연구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인권이 학위논문의 주제가 되기 시작한 것도 이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큰 진보이다. 한국사회학자에 의한 인권운동 관련 박사논문이 미국과 한국에서 (공석기, 이정은 등) 발표되고, 석사학위 논문도 다수 생산되었다. 이 연구자들이 계속 인권연구를 축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학문 후속세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는 인권사회학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핵심교양과목으로 ‘인권.NGO.세계시민사회’라는 강의를 2002년에 설립했으며, 대학원에도 2003년 ‘인권사회학’ 과목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나아가 인권사회학의 확대를 목표로 하여 영국의 대표적인 인권사회학자인 우디위스(Anthony Woodiwiss)교수를 2008-2011년에 특별 채용하여 인권사회학 강의를 학부와 대학원에서 영어로 제공했다. 우디위스교수를 중심으로 2009년 11월 전 세계의 대표적 사회학자를 초청하여 ‘인권과 사회적인 것: 새로운 지식의 창출 (Human Rights and the Social: the Making of a New Knowledge)’라는 국제학회를 열었다. 이 학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중심으로, 2011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출판하는 영문 사회학회지 <Development and Society> Vol.40, No.1은 학회와 같은 제목으로 특별호를 발행했다. 이 특별호는 영미권을 포함한 전 세계 사회학에서 인권사회학의 발전사와 주요 잇슈들이 정리된 기념비적 저널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론과, 역사,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던 인권연구가 2000년대 후반 새롭게 계량적 연구로 지평을 넓히기 시작했다. 구정우, 공석기, 정진성이 공동작업으로 세계적 차원의 인권지표 분석을 시도하고(2010), 유엔조약기구 권고를 기초로 하여 한국 인권지표를 개발·분석한 후(2012), 정병은과 법학자(김두년) 및 교육학자를 포함하여 국민인권조사를 설계·조사·분석했다 (2011). 이 학자들은 일본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주관의 5개

국 공동조사에 인권문항을 포함시켜 인권의식 비교분석을 시도하는 등 다각적으로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제도적 발전도 이루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한국사회학 내에 인권 섹션을 설립하여 매 대회마다 3-4개의 인권사회학 논문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는 한국사회학회의 분과학회로서 인권사회학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학회에는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 외에 소수자 연구자(박경태), 여성인권에 대한 계량적 분석연구자(유은혜), 과거청산문제 연구자(한성훈) 등, 인권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인권사회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V. 인권사회학 연구의 동향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발전하기 시작한 인권사회학은 ‘인권’ 개념을 해체·재해석하는 사회구성적/담론지향의 접근, 인권개념의 형성과 발전에 주목한 비교역사연구, 그리고 인권 실태의 측정, 인권의식조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계량적 연구, 그리고 인권의 실천에 주안점을 둔 규범적 접근의 네 범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적 차원의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가 증대하여, 그동안 한 국가 내의 사회적 조건에 집중했던 기존의 사회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 인권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사회학에서 인권을 연구대상으로서 주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인권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human rights)이다. 즉 인권을 주어진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 위치지우고 맥락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인권개념을 가지고 있다.’²⁰⁾는 사실에 주목하여, 한편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주의²¹⁾ 주장에 문제제기를 하며, 다른 한편 그러한 인권규범이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법제화되고 있는가의 문제와도 연결시킨다. 인권규범을 사회적 사실로서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joberg et al.2001)

20) Marie-Bénédicte Dembour(2010)는 많은 인권논의를 고찰한 후,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natural scholars(인권을 주어진 것으로 보는 입장), deliberative scholars(대체로 동의하는 입장), protest scholars(인권의 보편성에 대항하는 입장), 그리고 discourse scholars(대화하는 입장)으로 나누었다.

21) 보편성(universality)과 보편주의(universalism)는 구분된다. 보편성이란 특정 개념에 대하여 세계적인 동의를 구하고 발전시키는 시도라고 한다면, 보편주의란 세계적 차원에서 획일성을 성취하기 위해 특수성을 없애려는 시도를 말한다. (Marks & Clapham, 2005)

이러한 인권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사회학의 분석이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디위스(2003,2005)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이 보편적이라기보다 미국과 유럽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 동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이 규범들이 현재 세계의 권력관계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회구성론적 해석을 함으로서 제3세계가 포함된 국제인권레짐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국제인권규범이 보편적 원리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인권이 외교나 국제적 경제관계에서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서구만의 고유한 창조물이 아니며, 여러 문화권에서 다소 다른 형태의 인권개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사회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우디위스는 일본의 노동법에서 서구와 다른 가부장적 인권개념이 형성되어 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Woodiwiss,2005), 한상진은 유교에서 서구와 다른 공동체적 인권개념이 배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한상진,1996). 다니엘 벨은 토착문화에서 인권의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은 인권을 확산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니엘 벨, 1996)

이러한 인권의 사회구성론적 분석은 인권침해의 사회구조적 조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곧 사회마다 다른 인권실천(implementation)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끈다. 예컨대 Gomez(2003:85-92)는 비교-역사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쿠바,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에서 어떻게 국내적(정권 변동, 내적 위협 등), 국외적 변수(지정학적 변동, 독재정부에 대한 외부 지원, 외부의 위협, 국제평화활동, 외부의 비판 등)들이 작동하여 인권침해가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한다.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레짐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 만큼, 그것의 실천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학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De Feyter(2010:54)는 사회학자들이 왜 인권규범 실천이 사회마다 다른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정진성(2003)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야기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전쟁 중 여성인권침해라는 보다 보편적인 사회적 조건과 동아시아의 (반)식민지 관계라는 특수한 조건이 교차하는 지점에 주목하면서, 문제해결 역시 보다 광범위한 세계여성인권운동과 동아시아 과거청산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인권사회학의 분석들은 세계인권논의의 난제 중 하나인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의 특수성의 갈등을 넘어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역사적 연구

인권사회학 연구의 또 다른 큰 흐름은 인권개념의 형성 또는 인권상황의 변화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이다. 서구에서 이미 인권의 역사에 관한 역사학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데, 사회학적 분석시각에서의 역사적 연구는 인권역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소머스(Somers, 2008)와 터너(Turner, 1993)는 시민권과 인권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했으며, 이안 니어리(Neary, 2002)는 한국, 대만, 일본의 인권상황의 전개과정에 대한 비교역사학적 연구를 발표했다. 이밖에 우디위스 앞서 언급한 많은 연구자들이 특정 시기, 특정 사회의 인권 개념 형성에 관한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인권발전에 관한 역사학 연구들의 지평을 넓히고 분석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한국 인권사회학연구에서 역사사회학적 연구의 비중은 작지 않다. 이정은(2008)은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인권개념이 형성된 것이 1970년대 이후라고 보는 통상의 관념에 대해 세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해방 후 권위주의정부 시기에도 인권의 제도적 기초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구정우(Koo,)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을 분석했다. 정진성 등은 (2010)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인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3. 계량적 연구

앞서 UNDP등의 인간개발지수 개발과 측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사회학에서 인권을 양화(量化)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연구가 다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의 각 요소에 대한 지표.지수화 작업이 동반되며, 이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측정과 비교분석이 다양한 통계기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인권의 계량연구는 이와 같이 나라별 통계와 비교분석에서 시작되었지만, 인권의식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통하여 개인의 인권 의식과 태도에 대한 분석으로도 발전되었다. 사회적 조건과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 등에 관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같은 조사를 시차를 두고 시행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탐색하기도 한다.

먼저 인권의 범주와 정의(definition)에 대한 논의를 주목할 수 있다. 어떤 인권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얼마나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가

가 계량적 인권연구의 중요한 관건이다. 대체로 조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의 인권의식/태도에 비해, 국가 수준의 인권상황 측정에서 무엇을 인권으로 규정하는가는 더욱 중요하다. Todd(2004)는 한 국가의 인권을 인권의 원칙(principle), 실제(practice), 그리고 정책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에서의 인권이란 국가가 인권을 얼마나 잘 준수 할 의지를 천명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제인권조약 가입의 여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실제란, 국가가 이 인권 원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여러 관련 정부통계, 유엔 등 국제기구가 생산하는 지표.지수들이 사용된다. 정책은 국가가 인권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위 세가지 차원을 분석적으로 구분하여 한 나라의 인권상황을 총체적으로 측정하여, 나라간 비교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각 범주에 속하는 여러 분야의 인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인권개념에 대하여 다소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일한 개념에 근거하여 인권을 측정한다는 일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예컨대 영아사망률이나 평균기대수명과 같이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인권 주제가 있지만, 빈곤, 고문, 폭력, 차별 등과 같이 나라마다 개념이 다른 주제에 대하여 어떻게 계량 가능한 정의를 할 것인지는 양적 연구에서 큰 난관이 아닐 수 없다(Goldstein, 1986).

인권의 계량적 연구에서 지표.지수화 작업이 기초가 되는 것도 이러한 인권 정의(definition)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나라마다 다른 인권개념을 고려하면서도 인권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지향은 지표.지수화 작업에 큰 기반이 된다. 인권의 사회적 구성이나 역사적 연구에서 다소 융통성 있거나 해체적이기까지 한 인권개념이, 계량적 인권연구에서는 유엔 중심의 인권헌장, 세계인권선언이나 여러 조약들에서 규정하는 인권개념에 보다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도, 측정의 정확성을 위한 개념의 일관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표(indicator)를 어떤 개별 인권주제들로 표상하는가의 문제는 쉽지 않다. 예컨대 국가억압이라는 지표를 나라마다 정의가 다른 고문으로 결정.측정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의 문제이다(Barsh, 1993:90). 더욱이 여러 지표들을 결합하여 지수(index)로 만드는 일은 한층 어려운 작업이다. 예컨대 명확하게 정의된 여러 구체적인 인권주제들로 구성된 성차별, 인종차별 등의 차별을 결합하여 차별지수를 만드는 작업이

그것이다. UNDP가 매년 발행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나 정치적 자유 지수(Political Freedom Index)등의 대표적인 지수들이 극히 제한된 지표만을 사용하거나²²⁾ 큰 범주, 예컨대 높음, 중간, 낮음 등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사회학의 계량적 연구들은 이러한 이미 만들어진 지표나 지수를 사용하거나 연구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연구에서보다 이론적 가설과 검증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서 임의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나라 안에서의 시계열적 분석도 그렇지만 국가 간 비교분석을 위하여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은 계량분석의 최대과제 중 하나이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며, 유효한 데이터, 더욱이 나라들 간에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주의를 요하는 일이다 (Barsh,1993:92).

이러한 계량화의 기초적 조건이 수립된 후, 인권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지표와 지수를 이용하여 한국의 시계열 분석과 다수 나라들의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아직도 다수 나라들의 비교가능한 데이터와 지표들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Goldstein 등), 이러한 계량적 분석이 인권사회학 발전에 기여한 바는 엄청나다. 특히 계량적 분석을 세계정체이론(world polity theory) 시각에서 시도하는 연구자들은 이론적, 방법론적 치밀함으로 인해 인권을 미국주류사회학에 접목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계량적 인권연구의 또 다른 발전은 인권의식/태도조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의 한국과 또는 다수 나라들에 대한 비교분석이 ‘국가’를 단위로 한 연구라고 한다면, 의식조사는 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태도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권연구의 또 다른 지평을 여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표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계량화인데 비해, 의식/태도조사는 인권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식이라는 점에서 인권연구의 또 다른 차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태도조사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통계적 기법에 따라 한 나라의 시계열적 인권상황 분석에 사용될 수 있고, 또 같은 설문을 사용하여 다수의 나라에서 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수 나라들에 대한 비교분석도 가능하여, 인권연구의 개인-지역-국가

의 다차원적 연구가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권실천을 효과적으로 하기 원한 정책 입안에 활용되기도 하여, 인권실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사회과학 연구에서 전 세계적인 권위와 활용도가 인정되고 있는, 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조사하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와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된 갤럽 조사(Gallup International Millennium Survey)가 인권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1970년대말부터 새로운 인권의식조사들이 속속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등에서 사회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인권문항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인권의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²³⁾

4. 규범적 접근

인권연구의 또 하나의 그룹이 규범적 접근이다. Judith Blau, David Brunsma와 같은 사회학자는 인권을 사회에서 실현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사회학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들은 윤리(ethics)를 사람들 간에, 집단 간에, 공동체 간에, 국가 간에 관계를 맺는데 작용하는 원칙(principles)이라고 정의하고, 사회과학은 이러한 윤리를 증진하는데 적합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 경제의 발전으로 빈곤과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핵심적인 인권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원칙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것은 유엔의 보편적 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등 주요 조약, 그리고 ILO, UNESCO등 유엔기구들의 여러 조약과 선언들을 일컫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인권규범을 증진시키는 협력과 연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평화와 화해 등의 윤리적 원칙을 위하여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헌법에 인권 내용을 넣어 개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Moncada & Blau, 2006:115-120)

VI. 결론: 사회학 발전에 대한 인권연구의 기여

세계화와 개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을, 기존의 국민국가와 시민권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이 분명해졌다. 국가간 인권상황의 비교연구와 국제적 차원의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 및 한 국가의 인권상

22) 인간개발지수는 일인당 GDP, 기대수명, 문해율, 교육연수의 네 가지 지표만으로 구성된다.

23) 인권의식조사에 관해서는 (정병은,2013)을 참조할 것.

황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들은, 앞서 재차 언급한대로 법과 철학 중심의 인권 연구에서 사회학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권연구는 기존의 사회학에 새로운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여 새로운 시대의 사회학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 몇가지 예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시민사회론의 수립을 인권연구가 제시하고 있다. 사회학은 자본주의 발전과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형성된 시민계급에 대한 논의로부터, 경제적 계급에서 벗어난 일반시민으로 초점을 돌린 시민사회론을 발전시켜왔다. 이제 국제 노동이주와 난민이 대규모로 형성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로 국한할 수 없게 되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난민신청 중의 실향민(asylum seeker), 그들의 아이들 등 ‘비시민(non-citizen)’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비시민의 인권이 연구되고 있는데, 인권 사회학은 이 인권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사회학에 새로운 시민사회론의 전망을 열어줄 수 있다. 이러한 비시민과 새로운 시민사회론의 연구와 함께 세계사회(global society) 형성, 특히 국제적 차원의 인권운동의 결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세계사회 형성에 대한 효과 연구도 괄목할 만하다.(Gready,2004; De Feyter,2010:54)

둘째,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인권연구가 제공할 수 있다. 국제노동이주와 국제결혼 등을 통한 다문화사회의 상황에 대하여, 사회학은 깊이 있는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 유엔 등에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인권과 관련 국가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이주노동자조약이 1990년에 만들어진 후, 2003년 검토위원회의 수립과 함께 유엔에서 2003년에 효력을 발생했으며, 인권이사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가내노동 집중과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연이어 산출했다. 이러한 인권논의들과 사회학적 통찰이 결합되면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 지평이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의 예로 볼 때, 이주노동자조약 가입국가가 대부분 송출국가에 국한되고 유입국가의 가입은 거의 없는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의 인권-발전 맥락에서의 통합 분석도 새로운 시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량학살(genocide), 과거청산(transitional justice) 문제는 물론 한 국

가 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심각한 인권침해문제에 반드시 외부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권관점에서의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사회학적 관점을 보완하고 있다(O'Byrne,2003; De Feyter,2010:55). 사회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사회학의 권리에 대한 공동체주의 전통은 최근 국제인권법에서 차츰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s) 개념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MacIntyre 1981; Sandel,1982; Turner,1993:492), 젠더문제를 인권 시각에서 고찰하는 연구의 발전 등, 인권연구가 사회학 이론발전과 지평을 넓히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참고문헌>

- 공석기. 2013
김두년. 2013
이정은. 2008. <해방후 인권담론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연구. 1945~1970년대 초> 서울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정은. 2013 “
임현진. 2006. “한국의 발전경험과 대안모색: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서” <한국사회학> 제 40집 제1호
정근식, 이정은 외. 2004.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 (경인문화사)
정병은. 2013 “
정진성. 2000.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인권재단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_____. 2003. “전시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19권 2호
정진성,공석기,구정우. 2010.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인권개선조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프리먼, 마이클 (Michael Freeman), 김철효 역. 2002(2004). *Human Righ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Cambridge, UK: Polity)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한상진. 1996. “인권논의에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 <계간사상> 겨울호.
Barsh, Russel Lawrence, 1993, “Measuring human rights: problems of methodology and purpose” *Human Rights Quarterly*, Vol.15, No.1
Bell, Daniel. 1996. “The East Asian Challenge to Human Rights: Reflections on an East West Dialogue”, *Human Rights Quarterly*, vol. 18, August.

- Berger, Peter. 1963. *Invitation to Sociology: A Humanistic Perspective*
- Connel, 1995
- Cushman, Thomas. 2012 "Introduction" Thomas Cushman ed. *Handbook of Human Rights* (Routledge)
- De Feyter, Koen. 2011, "Law meets sociology in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Society*, vol.40, no.1
- Deflem, Mathieu. 2007. "Public sociology, hot dogs, apple pie and Checrolet," *The Journal of Public and Professional Sociology*, vol.1, inaugural issue.
- Deflem, Mathieu and Steph Chicoine, 2011, "The sociological discourse on human rights: Lessons from the sociology of law," *Development and Society*, vol.40, no.1:101-116.
- Dembour, Marie-Bénédicte, 2010, "What Are Human Rights? Four Schools of Thought" *Human Rights Quarterly*, Volume 32, Number 1:1-20
- Goldstein, Robert Justin. 1986. "The limitation of using quantitative data in studying human rights abuses" *Human Rights Quarterly*, Vol.8, No.4
- Kong, Suk-Ki. 2006. "Transnational Mobilization to Empower Local Activism: A Comparison of the Korea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Movements." Department of Sociology, Harvard University
- Lanman, Todd. 2004. "Measuring human rights: principle, practice, and policy" *Human Rights Quarterly* 26: 906-931.
- Marks, Susan and Andrew Clapham. 2002, "Universali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xicon* (Oxford)
- Moncada, Alberto & Judith Blau. 2006. "Human Rights and the Roles of Social Scientists" *Societies Without Borders* 1.
- Ian Neary. 2002. <Human Rights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Routledge)
- Pizarro, Gabriela Rodriguez, "Migrant Workers: Specific Groups and Individuals"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N.4/2004/76)
- Sjoberg, Gideon, Elizabeth A. Gill, and Norma Williams. 2001. "A sociology of human rights" *Social Problems* 49(1)
- Somers, Margaret R. and Christopher N.J. Roberts, 2008, "Toward a new sociology of rights: agenealogy of "buried bodies" of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The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s*
- Turner, Bryan. 1993, "Outline of a theory of human rights" *Sociology* vol.27, no.3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2.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promo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rough a better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values of humankind" (A/HRC/22/71).
- Vaughan, Ted R. & Gideon Sjoberg. 1986. "Human Rights Theory and the Classical Sociological Tradition" in Mark L. Wardell & Stephen P. Turner eds. *Sociological Theory in Transition* (Allen and Unwin)
- Woodiwiss, Anthony. 2005. *Human Rights* (Routledge).

인권 정치학: 현재와 미래 과제

2016년 3월 11일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1. 인권의 발전과 인권연구의 발전: 인권현상 연구로서의 정치학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현재까지 국가와 개인, 국가와 국가, 그리고 다양한 사회집단까지 포함한 관계들을 변화시켜 온 주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가 인권의 발전이다. 이전에도 이미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었고 국제 적십자 운동, 노예제 폐지운동, 노동조합운동 등 인도주의에 기반한 사상과 행동이 발전해왔지만 이러한 사상과 행동이 추구하고 보호하려는 바가 보편적인 권리로서 주장되고 수용된 것은 2 차 대전 이후의 일이다. 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되어 국제사회가 인권을 정의하고 규범화하는 기초가 되었고 인권 연구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의 인권 연구는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즉 인간이기에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된 인권개념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과 구체화된 권리들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국제인권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1966년에 채택되어 인권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 세계인권선언과 더불어 국제인권장

전으로 제시됨으로써 구체적 권리들이 갖는 정당성, 정합성, 그리고 체계성, 또한 기존의 국내법과의 정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그 이행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조약기구의 탄생과 함께 인권규범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다.

인권규범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79년 여성차별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그리고 200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으로 더욱 구체화되었고, 최근의 기업과 인권, 온라인상의 사생활 보호 등의 새로운 이슈까지 등장했다. 이에 따라 규범적, 법적 연구에서는 인권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인권의 내용인지,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인권보호와 관련된 규범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초기부터의 인권의 규범적, 법적 연구가 규범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고 규범의 실행을 어떻게 이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970, 1980년대부터 등장한 인권의 사회과학적 연구는 국가와 개인 및 사회집단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와 보호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정치학의 영역에서는 왜 어떤 나라는 인권을 침해하고 어떤 나라는 보호하는가,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인권침해를 중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이 제기된 것은 인권의 국제규범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권은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가 되었으며 정치적, 학문적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를

포함한 남아메리카 국가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문제 등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토론의 장에 등장하게 되었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양자외교의 수단을 통해 다른 나라에 인권규범을 따르도록 하는 인권외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

인권의 사회과학적 연구가 확대된 데는 정치적인 배경뿐 아니라 학문적인 배경도 작용했다. 1970년대에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가 별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미국 국무부와 국제사면기구가 매년 각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기술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고 1980년대에는 이를 이용하여 계량적인 방법으로 각국의 인권실태를 포착하려는 인권지수개발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토대 위에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원인, 각 나라마다 다른 인권 실태,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증진 수단의 효과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1990년대에 들어 활발해진 국제레짐 연구가 기반이 되어 법학과 국제정치학을 막론하고 국제규범과 제도가 형성되는 정치적, 사회적 조건과 제도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다.

지난 70여 년간의 인권연구는 인권개념의 정립과 확대, 인권의 규범화와 제도화, 그리고 국제이슈화 등의 국제적 흐름에 힘입은 바 크다. 특별히 인권의 정치학적 연구는 인권의 규범화와 제도화가 이루어진 이후 국제사회에서 각 나라의 인권문제가 논의되고 각국 정부는 물론, 국내 집단과 국민들까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물음을 전제로 하여 인권 자체가 아니라 각 나라의 인권침해와 보호의 현상, 그리고 타국의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정치적 조건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서 살펴보게 되었다.

2. 인권과 국가: 본질적 연관성

인권이 정치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된 이유는 먼저 인권개념이 정립되고 확대될 때 인권을 국가 혹은 정치 권력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개념은 중세 이후 철학에서의 자연권 논의에 바탕을 두는데, 인간에게는 본연적으로 주어진, 빼앗을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사상의 토대 위에 인간의 자유를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한 근대 유럽 정치에서 인권개념은 국가의 주권자와 시민의 관계에서 파생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 내용으로 하였는데,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시민이 보호받을 권리가 주권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연의 권리라는 생각이 제시되고 수용됨으로써 인권이 최초로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사상이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이념이 됨으로써 국가는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생명과 신체의 보호,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의 시민적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 등의 정치적 권리는 자유주의 국가,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보장하는 시민권으로서 보장되어왔고, 이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가 이전에 시민권으로서 그리고 이후에 보편적 인권으로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더라도 현실에서는 국가 권력으로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투옥과 고문 등을 겪어왔다는 데 있다. 국가는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자다. 국가권력의 주도나 방조로 이루어진 대량학살은 말할 것도 없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등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20 세기 후반에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명의 수가 십만, 혹은 몇십만을 헤아린다. 생명과 신체의 보존을 비롯한 이러한 권리들이 국가의 정당한 권력이 미치지 못해 침해 받는 경우도 찾지만

어떠한 노력을 얼마만큼 들여야 인권침해가 없어질 수 있을지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다. 반면에 국가가 생명과 신체의 보존을 해치는 일은 국가가 그것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즉각적으로 인권이 향상된다.

국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모든 종류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자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국가가 국제인권규범을 인정하고 조약을 체결한 주체이며 그 조약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지는 의무담지자이기 때문이다. 20 세기 후반부터 발전되고 제도화된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부터 교육, 노동, 사회보장, 식량, 주거 등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한다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나아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 사이에 있어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규범을 수용한 국가들은 첫째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둘째로 차별금지의 국제규범을 받아들인 국가들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출신 등 모든 사회적 조건에 따른 약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 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 받고, 실제로 이를 이행했는지 국제 사회의 검토를 받는다. 셋째로, 여성, 아동 등의 집단이 특별하게 가지는 권리들, 예를 들어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모성보호, 부모와 살 권리 등이 규범화되고 규범을 수용하는 국가는 정책과 행동을 취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가장 중요한 보호자인 두 번째 이유는 국가 이외에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을 기울일 주체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보호의 의무를 지지만 인권침해를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지는 것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있는 데 반해 타인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책임 지우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개별국가가 영토 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는 유일한 주체다. 최근에는 국가가 국내적 의무는 물론, 국제적 의무를 지느냐 하는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계획과 같은 인권과 관련된 최근의 국제적 합의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영토 안에서든 밖에서든 국가가 책임을 맡지 않으면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이 국가가 인권의 보호자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다.

3. 인권과 정치학: 실용적 연관성

인권이 정치학의 연구주제가 된 또 다른 이유는 인권이 규범화되고 제도화된 이후 인권보호와 침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연구 될 때 비교의 단위가 주로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사회과학은 인권침해현상과 인권보호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답하기 위해 누가 누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변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이러한 침해와 보호현상이 기록되고 분석되는 단위가 국가였고 설명변수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대비할 때도 국가별 변이가 적용하기 용이했다. 특히 계량적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이렇게 국가를 단위로 설계된 인권지수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수의 회귀분석이 많이 시도되었다.

특히 정치학에서 인권침해와 보호현상의 국가별 비교 연구는 비교정치학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였던 민주주의 조건에 대한 연구가 나라들에 존

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탐구함으로써 어떤 요인으로부터 민주주의가 발생하거나 유지되는지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 안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와 보호의 현상이 그 결정요인들과의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치학적 인권 연구는 어느 나라가 인권을 보호하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민주주의, 경제발전, 국내외 무력분쟁, 효율적인 관료제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능력, 활발한 시민사회 등이 인권현상과 연관을 맺음을 보여 왔다.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경제원조, 제재 등 외부 수단이 인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왔다. 그리고 인권향상이 일어난 다수 국가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과 초국가적 인권네트워크가 국내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제도 및 실질적인 발전 수준과 맞물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인권의 향상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겪은 나라들에서 진실과 화해 위원회 등 전환기 정의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고 그러한 일들이 인권의 증진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인권현상 연구는 국내 정책결정자와 국민은 물론 인권증진을 꾀하는 국제적인 집단에 실제적인 지식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데, 첫째는 지금 겪고 있는 인권침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권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 셋째는 인권침해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침해방지의 효과를 갖는 국내 정책은 무엇일지, 또 어떤 국제적인 노력을 가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4. 도전과 과제

최근 인권규범 확대의 흐름 속에서 발견된 현상은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예전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비정부기구와 이들의 연대로 이루어진 초국가적 인권네트워크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이러한 인권옹호그룹들은 인권침해국 정부와 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레짐 안에서 어젠다를 형성하고 인권규범을 구체화하는 데 국제인권기구들 내의 전문가 그룹은 물론 국가의 대표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북한인권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유럽의 시민사회였고 이들의 문제 제기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부를 포함한 국제인권기구와 유럽연합 기본권기구 같은 지역인권기구들이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거나 정책적인 수단을 권고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할 때 비정부기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옹호그룹의 활동을 통해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의제 형성과 규범 수립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 하나의 현상은 기업의 인권책임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이외의 행위자에게 구체적인 인권보호의 의무를 지우는 규범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구체적 규범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만 제시되었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영보고를 하는 형태일 뿐 이지만, 기업의 고용, 생산, 판매, 구매 등 거의 모든 기업활동에 인권규범 준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감시하려는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 이외의 행위자의 중요성에 대해 정치학 연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인권의 보호와 침해행위는 최종적으로 국가(정부)의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로, 혹은 결정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가(정부)의 결정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에서 인권옹호그룹과 인권문제를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레짐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국가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의제형성과 규범수립에 인권옹호그룹이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다. 기업의 인권 책임에 관해서도 규범의 수립과 실행에서 국가가 배제된다기보다는 국가와 국가 이외의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예상된다. 국가 이외의 행위자의 등장은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정치학적 접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해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인권을 연구하는 정치학 연구에 주어진 또 하나의 도전은 다양한 인권의 측정 문제다. 유엔 새천년목표계획, 유엔 지속가능발전계획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은 단순히 도덕 원칙의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또한 상호 협력하여 이루어내야 할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인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데 인권을 핵심가치로 하고 인권의 관점을 핵심 요소로 설정함에 따라 계획수립, 사업실행, 결과평가에 이러한 가치와 관점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추상적인 규범과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의 개발, 성장, 발전에 집적 데이터를 사용한 평균적 수치, 예를 들어 일인당 국민소득이나 기대수명 같은 수치가 아닌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인권의 국가간 비교연구는 주로 국가의 생명과 신체 보존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국가가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의 향상을 가져오는 소극적인 보호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계량화가 쉽다는 장점

Q
기여방법

이 있고, 고문, 실종, 투옥, 및 자의적 살해의 피해자 수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측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명과 신체 보존권의 측정이 인권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활성화시켰던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인권의 측정이 수많은 연구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의 인권을 위한 정치학 연구의 과제

정치학의 인권연구는 국가는 왜 인권을 침해하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겠는가, 왜 어떤 국가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인권보호를 확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을 통해 인권보호와 침해의 행동에 대한 사후적 설명을 제공해왔다. 한국의 인권을 위한 정치학 연구는 이러한 질문과 설명에 주어만 바꾸어 질문하고 답하면 될 것인가? 정치학이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제시한 일반화된 명제들이 한국의 인권을 위한 연구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 점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한국 사회내의 인권 문제 뿐 아니라 한국이 당면한 북한 인권 문제, 아시아 지역 인권 협력 문제 등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인권을 향한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를 얻으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가?

첫째, 정치제도, 사회안정, 정부능력 등의 요인이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예측하기보다는 각각의 요인들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때 국가들이 경험한 발전 경로는 제각각 다를 수 있고 인권현

상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한국의 인권을 설명하고 실제적인 전략을 생각할 때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놓친 독립변수들간의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한국이 걸어온 경로와 현재 위치에 대한 큰 그림도 그려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발전경로와 위치에 대한 통찰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크를 위한 비교연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북유럽의 인권선진국의 사회복지와 고용안정 등 인권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 논의하는 노력이 있다. 선진적인 정책이 선진적인 결과를 낳지만 이러한 정책 자체를 가능하게 한 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경로를 먼저 추적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유럽 선진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재건을 할 때 어떤 경로를 따랐는지 1980년대 경제침체의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 인권이나 지역 인권 협력과 같이 국제적인 협력을 요하는 인권 증진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인 연구의 결과에서 방향을 얻되 거기에 얹매이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북한 핵문제가 타결된다면 한국은 결국 북한 당국과 인권, 경협 등 동일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어떤 제도적, 정책적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지난 20년간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경험을 면밀히 고찰하는 것과 무슨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과 지역 인권 협력을 연계하여 새로운 인권 증진 외교의 패러다임으로 삼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남북 공동의 인권 문제를 다자간 인권협의체에서 제기하고 공동의 노력을 가하는 방안, 유엔경제사회이사회나 기후변화협약 등 북한이 아직 참여하고 있는 국제 제도에서 다양한 문제를 인권적 접근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제삼

국과 북한의 토론 채널을 형성해주는 방안 등 과거의 경험과 현실의 문제 해결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한국 인권 정치학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Carey, Sabine C., Mark Gibney, Steven C. Poe. 2010.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the Quest or Dig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nnelly, Jack. 2007.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ulder, C.O.: Westview Press.
- Donnelly, Jack. 2013.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Forsythe, David. 2012.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eman, Michael. 2011. *Human Righ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Cambridge: Polity.
- Lamdman, Todd. 2005. "The Political Science of Human Righ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3): 549-527.
- Risse, Thomas, Stephen C. Ropp, and Kathryn Sikkink. 1999.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현대 한국사회 인권학의 과제
2016.3.11
한국인권학회 1차포럼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한국인권학회 (가칭)의 결성은 인권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다려 왔을 일이고 또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엄밀히 말해 인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 활동은 '인권론'으로 불러야 정확하다. 그러나 인권 연구를 통해 관련 분과학문들의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대상 영역이 확장되며 연구방법론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리하여 그런 변화가 인권론의 독자적인 위상 설정으로 이어진다면 '인권학'이라는 표현이 정당성을 얻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인권학은 진정한 의미에서 융복합형 학문 모델에 부합되는 종합학문의 전형이 될 잠재력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위성사진 이미지 프로세싱이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소를 찾아내는데 필수불가결한 분석기술로 등장한 사실만 보더라도 인권학의 종합적 성격을 알 수 있다. 인권학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는 전세계 모든 인권 문제를 탐구할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본고의 제목에 굳이 '한국 사회'를 붙인 이유는 인권이라는 실천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큰 틀에서, 인권학 연구가 현대 한국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인간 존엄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실천적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권학회가 한국 사회의 인권 현실을 반영하는 인권학의 정립,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의 목적은 현 시점 한국 사회에서 인권학이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과제들 중 일부를 소략하게 예시하는 데에 있다. 인권학의 학제적, 다학문적, 간학문적 성격을 기본으로 전제한 제안이다.

(1) 인권의 법제화 진전을 위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민주화 이후 30년 간 국가인권기구를 비롯한 각종 법·제도와 공식 정책들이 성립되었다. 제도화와 입법화가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특징으로 지적되곤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인정되는 성과이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법제도화가 달성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포괄적 반차별 입법의 지체가 좋은 예이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미비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형제도의 문제도 여전히 법적으로 미해결 상태에 남아 있다. 형사 절차, 교정행정, 복지시설, 난민 처우, 탈북자 처우, 소수자 보호 등, 한국 인권학은 법제도화를 통해 인권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영역에서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및 노동 관련 입법과 사법적 판단, 국가인권기구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대표성·투명성 제고, 정보기관의 인권침해를 통제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 국가행동계획의 내실화, 지자체 차원에서의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도시' 발전,

학생인권조례, 인권헌장 제정, 국내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인권규범의 실질적 반영 등, 법과 규범의 제정 및 제도화를 통한 인권 증진 방안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인권학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2) 인권 침해의 근본원인과 메커니즘

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를 ‘인권 문제’로 의제화하며, 피해의 실상을 기술하고, 책임자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권 문제를 다루어 온 접근이었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일화적인 인권침해에 적합한 방식이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상호작용적 인과관계 모델에 근거하여 인권 문제를 파악하는 전통적 방식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이 침해되는 현상의 근저에 놓인 근본원인 (root causes)을 파악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구조적·설명적 인과관계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 역으로,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본조건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경향적으로 보아, 인권 문제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관점에서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으로의 이동을 뜻한다. 더 나아가, 인권 문제를 법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개입의 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에 인권법학회와 인권학회를 어느 정도 구분 지을 수 있는 방향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사법부 그리고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할 때 인권이 신장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권보호 제도를 통해 개별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원인을 해결한다고 해서 향후 유사한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과 전체 사회의 인권을 증진하는 차원, 이 두 가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구조적 인과관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권학은 인권이라는 특수 전문 영역의 경계를 넘어,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거시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의 힘과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3) 인권의 법제화를 넘어 인권을 실제 향유하는 방안

위의 주장과 관련하여, 현 단계 한국 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 관련 사안들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권학의 문제의식이 그것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법, 제도,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분석하고, 그 근본원인을 드러내고, 그 연구가 함축하는 논리적 귀결을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 관련 제도가 있어도 그것이 의도하는

인권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법 규정의 모순과 허점, 관련기관의 비협조, 사법절차 상의 반인권적 관행, 법집행 공무원의 의식과 교육 미비, 예산 확보의 한계, 여타 정책과의 우선순위 경쟁 등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인권학은 이런 차원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보다도 더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의식과 태도가 정치적 의사결정, 자원배분,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권 정책의 이행에 있어 여론의 비중과 역할이 크다는 사실은 민주사회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중의 인권 의식과 여론에 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고 반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과감하게 연구해야 한다. 당연히 대중들이 인권에 호의적이고, 모든 인권을 찬성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대중들의 사회심리적 태도와 이데올로기 정향이 인권의 실천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개입방안—정책, 교육, 커뮤니케이션 등—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인권은 수사적 차원에서는 ‘보편적’이고 ‘불편부당’한 규범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우파 정치와 보수대중 여론의 측면에서 인권은 좌파 혹은 진보파의 이념적 등가물처럼 경멸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당파적 논란으로부터 초연한 메타 규범이라기보다 특정한 이념 진영의 무기처럼 간주되곤 한다. 언론이나 공론장은 물론이고, 어쩌면 학계에서도 이런 경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식의 편향적 인식과 인상이 인권의 증진에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정면으로 밝히고, 그런 편견과 싸우는 것도 한국 인권학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민주주의의 질과 인권, 국제 인권과 국내 인권, 그리고 권리 간의 충돌 유엔인권조약 위원회들의 보고, 특별보고관의 조사, 주요 국제인권단체들의 평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한국의 인권상황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자료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팩트에 속한다. 이런 현상은 보수정권의 집권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지적된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기준으로 보아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적으로는 G20에 속할 만큼 성공적인 나라로 인정된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193개 유엔가입국 중 상위 10퍼센트의 하이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인권학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 인권 수준의 저하가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정권의 교체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의 범위 내에 있는 정상적 현상인가, 아니면 한국 민주주의의 질이 절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우려스런 현상인가? 다시 말해, 현재 한국 인권의 악화는 찻잔 속의

태풍인가. 그보다 더 심각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인가?

인권 담론의 확산과 함께 크게 늘어난 권리들 간의 충돌 문제도 인권학의 주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인권 담론이 민주주의-공화주의의 원칙과 분리된 채 파편화된 권리들의 개별적 추구로만 이해될 때에 흔히 나타나곤 하는 문제이다. 특히 다수결 민주주의의 원칙으로도 침해하지 못하는 인권이라는 대전제를 망각하고 권리들 간의 기계적 형평성만을 대비시키는 풍토-예를 들어, 시위 권리 대 시위 반대권리, 장애인 권리 대 지역주민의 혐오시설 반대권리 등-를 교정하기 위해 한국 인권학이 기여할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인권 외교의 측면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실을 한국 인권학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도 있다. 국제 인권조약제도의 틀을 지탱하는 유엔의 수장이 한국 출신이며, 2016년은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된 해이기도 하다. 한국이 유엔 가입 25년 만에 유엔 인권프로세스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성취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분단국으로서 빈곤과 독재를 거쳐 성공적인 국민국가 정치체를 구축한 한국이 국제 인권레짐에서 강대국형 행위자와 소국형 행위자 사이의 건설적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인권과 참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 개발모델 공여 활동의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대외 인권 외교의 확대가 국내 인권의 공고화로 이어질 것인가? 국제인권의 전문가형 인식론 모델과 활동이 국내 인권정책 및 국내 인권운동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둘이 분리되어 있는가? 국제 영역에서 국가 행위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일차적 가치로 간주하는 관점의 영향이 한국 외교에서는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런 경향이 인권을 외교의 수단이나 국익 추구의 하위 개념으로 치부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은가?

(5) 인권에 관한 한국 사회 특유의 맥락과 구조적 강제요인

한국의 인권 발전은 인권의 법제화 혹은 정치체제 변동이나 민주주의와의 연관성 속에서만 파악하기 어렵다. 분단과 남북한의 극심한 갈등, 그리고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의 상존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에서 ‘인권’만 논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는’ 결론을 도출하기 쉽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한국 사회 인권 침해의 하나의 거대한 배경원인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이념적 지형에서는 본격적으로 거론하기가 대단히 민감하고 난감한 문제가 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한 한, 한국 사회의 논의 수준은 10년 혹은 15년 전 수준보다도 더 후퇴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각종 보고서에서 늘 지적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에 대한 인권 상의 우려는 (이념적 고려가 아닌)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인권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점과 연동하여, 대결적 분단 상황의 특징을 반영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 인권학이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정면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 인권학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태도와 방식에 있어 인식론적이고 가치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말해, 한국 인권학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국제 인권학계처럼 국외자적인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내의 북한학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취하곤 하는 맥락적 함의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같은 문제를 인권의 고유한 논리만으로 다룰 수 있는가, 아니면 인권 이슈의 안보화라는 구조적 제약을 비판적으로 직시하면서 다뤄야만 하는 것인가?

요컨대 한국 인권학은 인권과 인권연구에 있어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리버럴’한 지적·정치적 문화의 빙곤,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정학적 제약조건을 첨예하게 의식하고, 그것에 대해 일정한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도록 요청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인권학계가 교류할 만한 카운터파트는 서구 선진국의 학계라기보다 만성적 안보화 패러다임 환경 속에서, 혹은 민주적으로 집권했지만 권위주의적 경향을 지닌 정권 하에서 기본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터키, 폴란드, 이스라엘, 북아일랜드와 같은 곳의 인권학계일지도 모른다.

(6) 새로운 인권 쟁점과 이슈

현대 한국 사회는 세계의 모든 인권 쟁점과 담론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 담론은 이미 주류 사회과학의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 지식계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페미니즘 혹은 포스트식민주의 주요 이론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론적 인권 논쟁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 관점으로 초점을 좁혀 볼 때 한국 사회는 여러 새로운 인권 쟁점들과 조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중 일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차별 문제, 그리고 인권의 ‘보편적’ 서사구조 내에 포함되기를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소수자 정체성 집단의 존재.

②환경권을 넘어 선 생태주의적 관점의 쟁점들, 특히 기후변화 시대의 인권과 생태권.

③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인권적 해석과 인권적 실행방안. 나아가 한국의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인권적 접근을 경원시하는 경향.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오히려 활동의 장애로 간주하는 사회사업형-프로젝트 하청형 국제 개발협력 모델의 한계와 시대착오성.

④동물권 보호운동의 성장과 그것이 인권운동에 주는 함의.

⑤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학적 변동이 초래하는 인권 문제들. 예를 들어, 본격적인 이주정책 없이 단지 경제적 동기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노동수급 정책만 계속될 때 예상되는 인권·사회 문제. 또는 노인 인구의 요양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비가시적 인권유린 문제.

⑥질병의 의료화에 따른 과잉진료의 문제 및 의료인들의 전문주의적 지배로 인한 의료 수요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그리고 의료-제약 산업의 영리적 동기에 의한—그러나 질병치료의 이름으로 묵인되는—환자의 각종 인권침해.

⑦병리적 교육열로 인해 빚어지는 인간의 등급화 및 인간관계의 수직화. 과시적 자격증명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쟁적 교육환경 때문에 평등하고 본질적인 인간 존엄성이라는 인권의 가치 자체가 출발선에서부터 거부되는 반인권적 문화의 문제. 반인권적 가치를 초기부터 내면화한 학동들을 재사회화해야 과제.

⑧인권운동과 정부 간 관계 설정에 있어 갈등형 모델과 포섭형 모델을 넘는 제3의 모델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넓은 의미에서의 인권정책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정부와 인권운동(시민사회)이 상호작용하고, 인권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인권학계가 그러한 인권정책 공동체의장을 매개할 수 있을 것인가?

⑨한국 근현대사에서 민권과 인권으로 상징되는 인간 존엄성 확보의 움직임을 역사사회학적으로 고찰한 연구들이 상당수 있다 (예: 형평운동, 1948년 이후의 초기 인권 제도화 사례, 한센인). 이런 연구들을 심화·확장하여 인권운동사, 인권개념사, 인권제도사, 인권경제사 등의 인권 히스토리오그라피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⑩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 비판적 이성의 육성이라는 인문학 본연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인권의 글로벌 정의관과 인문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문제영역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시민교육 커리큘럼에 인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인권을 민주시민 교육과 결합시켜 투표 참여율이 높은 장년층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과정에도 인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인권에 관한 본원적 질문

인권학은 그 일차적 활동 목표를, 인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새로운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으로 설정하기 쉽다. 특히 인권 전문가일수록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은 인권 개념과 정의를 암묵적으로 수용한 바탕에서 인권 연구를 수행하곤 한다. 그러나 인권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부터 쟁의적인 개념이다. 새로운 인권 쟁점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묻혀 있던’ 인권 이슈가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새롭게 의제화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개념규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인권이 끊임없이 형성-재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분출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인권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가’, ‘자유가 무엇이며, 인간은 자유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혹은 그것이 바람직한가’, ‘왜 인간의 가치가 불가침인가’라고 하는 본원적 질문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둘러싼 논란은 인권에서 볼 때 가장 핵심적 쟁점을 함축하고 있으면서도 그것 자체로 논의되기보다 인신매매 등의 파생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역사가 있다. 이런 질문들이 폐미니즘 연구, 젠더 연구, 섹슈얼리티 연구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결국 인간 존엄성의 본질을 묻는 질문임을 인권학이 상기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인권으로 호명되든, 호명되지 않은 간에 결국 인권의 합의를 지닌 모든 문제들이 인권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중들이 통속 언어로 표현하는 인간 존엄성의 질문에 대해 인권학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인권 규정의 잣대로 그것을 서둘러 재단하기보다. 그 질문이 아무리 초보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 자체의 규범적이고 실천윤리적인 합의성의 논란에 뛰어들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자문을 해 보자. 한국의 보통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대중적 인권 개념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범이 같은 것인가 혹은 다른 것인가? 다르면 얼마나 다른가? 이러한 상이성이 인권 담론의 확산과 실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인권학이 이런 점을 법규범적 엘리트주의의 시각에서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진지한 인류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요약하자면 인권학 연구자는 자신의 원래 학문적·실천적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기본 차원에서 ‘철학도’로서의 자세와 지적인 겸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종대·임태훈. 2014.『그 청년은 왜 군대 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나무와숲.
김중섭. 2001.『형평운동』. 지식산업사.
김창엽. 2013.『건강할 권리: 건강 정의와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류은숙. 2009.『인권을 외치다: 가장 낮은 가장 약간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꿔온 인권의 역사』. 푸른숲.
문경란·홍성수 편. 2015.『서울시민 인권현장』. 경인문화사.
박경서 외. 2015.『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철수와영희.
박경태. 2008.『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박찬운. 2012.『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서창록. 2004.『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다산출판사.
양현아. 2013.『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다산출판사.
장은주. 2010.『인권의 철학: 자유주의를 넘어 동서양 이분법을 넘어』. 새물결.
정진성 외. 2013.『인권사회학』. 다산출판사.
조효제. 2016.『인권의 지평: 새로운 인권이론을 위한 밑그림』. 후마니타스.

Amnesty International. 2013.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3: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Amnesty International. 2015.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4/15: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BTI. 2014. "Bertelsmann Stiftung Transformation Index 2014: South Korea Country Report." <http://www.bti-project.org/uploads/tx_itao_download/BTI_2014_South_Korea.pdf>. (검색: 2016.3.1.)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11.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CEDAW/C/KOR/CO/7.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012.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eighty-first session (6-13 August 2012)." CERD/C/KOR/CO/15-16.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2.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RC/C/KOR/CO/3-4.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RPD/C/KOR/CO/1.

UN Human Rights Committee. 2015.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KOR/CCPR_C_KOR_CO_4_22217_E.doc>. (검색: 2016.3.1.)

UN Human Rights Council.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013.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argaret Sekagya: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25/55/Add.1.

"한국인권학회" 준비 제1차 포럼 토론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세션 한국 '인권학'의 현황과 과제

1. 세 발표문을 읽고

- 발표문들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사회학, 인권정치학, 인권사회과학, 인권학의다학제성에 대해 논하고 있어서 '새로운 인권학'을 구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국가라는 인권보호 이자 인권탄압의 주체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 잘 지적하고 있고, "서구 선진국의 학계가 아니라 기본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터키, 폴란드, 이스라엘, 북아일랜드와 같은 곳의 인권학계"가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주목된다. 토론자는 특히 두 측면에서 인권연구에 있어 사회과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

-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실증적, 경험적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다수 인권침해혹은 차별판단에서 사회과학적 경험연구가 필요한 경우들이 산재하다.

(사례) 연령차별 문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장, 이장 위촉시 연령제한, 공원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연령제한(67세), 문화관광해설사의 연령제한(70세) 등(이상 2011 인권위)에서 적정한 연령설정이란 단지 집단간의 형식적 비교로 해결되지 않음. 진정직업자격(BFOQ)에 관한 법적 논리와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논리를 결합하여풀어야 할 사안들.

(사례) 근로현장에서 기능적 위생 공무원 임용시 계약직 경력을 (호봉에) 인정할까 여부(2011 인권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급에 따른 정년 차등(직급이 낮을수록 빠른 정년연령) 등에서 누구를 비교집단으로 할 것인가가 알파요 오메가의 문제인데 거기에는 경험연구에 기초한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규범론이 요청된다고 사료됨.

(사례) "감정노동자"의 고충, 성적 굴욕감과 같은 문제는 누구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가가 관건임. 한국의성희롱 사건에서 대다수 '합리적 인간(여성) 기준'을 적용하는데이 때 "합리적 인간(여성)이라면 이 경우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꼈을까"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자는 피해자의 입장을 채용해 보아야 한다. 즉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서소수자들의입장을 구성하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방법, 페미니즘의 '목소리' 방법 등이 필요함.

(사례) 검찰 조사시 피의자의 메모 행위 금지 문제(2011 인권위);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에서 고정식 명찰 부착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2012 인권위) 등도 일상생활에 배어 들어 있는 정치사

회문화적 관행에 인권법체계의 기준들을 적용해서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3. 인권문제가 배태된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 역사성에 대한 이해

- 생각해 보면, (한국사회) 인권문제 어디에서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힘과 역사적인 연원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폭력, 군대 내 가혹행위, 학교의 집단 따돌림과 경쟁과 획일주의적 교육체계, 가족 내 가부장제의 온존이외에도 교도소, 병원, 기업, 복지시설 등 거의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인권문제에는 식민지 피지배의 사회구조의 지속과 이에 기초한 근대국가의 건설, 남북분단이라는 전쟁적 상황,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 등이 그 사회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 이와 같은 인권문제에 대해 단지 개인과 개인간 혹은 집단과 집단간의 비교관점만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개인과 집단이 놓인 사회구조, 그리고 조직과 규칙의 역사성에 대한 고찰이 함께 필요하다. 앞서 본 연령차별문제나 피의자의 방어권, 군대 내 인권침해에 있어서 다분히 서구중심적이고 공시적인(horizontal) 접근으로는 문제가 잘 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권문제를 야기하는 관행들의 속살에는 커뮤니티의 차별적(내지 통념적) 인식이나 뿌리깊은 권력관계가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명하복의 조직원리와 의사소통의 부족(의사소통과 '버릇없음'의 경계 불명확), 가족주의와 보편적 시민의식의 부족, '여성의 지위'는 끊임없이 상승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2등시민'으로 인식하는 등의 현상의 근저에 깔린 사회역사적 지층(地層)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현재 확대일로에 있는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담론에 대한 사회과학적 대안논리가 필요하다(예컨대 성매매정책). 그리고 이 대안논리를 위해서는 통시적이고(vertical) 지역적인(local) 접근을 하였으면 한다. 이러할 때, 인권학은 인권에 대한 사회과학(내지 인문학)인 동시에 인권을 통해 보는 사회과학(내지 인문학)이 될 것이다.

제2세션 : '한국인권학회' 과제와 역할

1. 왜 '인권학회'가 필요한가? 인권학회 구성의 의의?

- 앞서 말한대로 학문 분과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여러 직역간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학과 사회과학적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하고 사회과학적 인권전

문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학이 보유한 축적된 선례와 판단기준, 사회과학의 이론적이고 경험주의적 연구방법이 결합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풍부한 인권논의를 전개할 수 있고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 다양한 주체간의 연대와 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 '제주 인권학술회의' : 활동가, 연구자, 법률가의 교류, 공무원과 시민간의 상호교류의 포럼을 제공하였고 다양한 인권의 제를 알리고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음 (호주제 위헌제청, 한국군인 베트남인 폭력, 복지시설 내 학대 등)

2. '인권학회'의 역할과 과제는?

- 국내의 새로운 인권문제의 발굴, 오래된 인권문제의 해결책 제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인 '과거청산', 가족 내 인권문제, 여성인권, 북한인권, 다문화주의, 이주와 난민, 환경 재앙 문제 등
- 공직자 선출과 선발에서 인권의식의 측정과 교육 실시.
- 서구중심주의 넘어서서 다각적인 국제교류, 제3세계 인권사업 지원 등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호교류, 인권관련학회 및 관련 센터와의 연대와 공동 연구 등
-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기구의 전문가 양성 및 사회전반에 인권의식 제고

<이상>

“한국인권학회” 준비 제1차 포럼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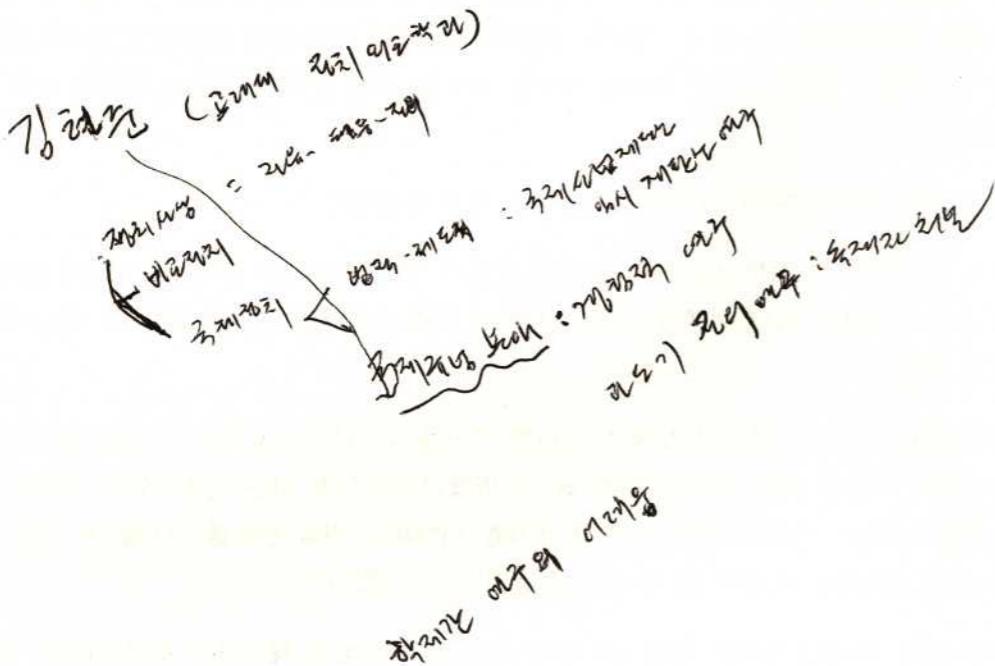
유영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학문 분야를 넘어서 인권의 이해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인권학이 목표
 - 인권학회가 추구하는 인권학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학문적 노력을 학자들이 혹은 어느 학문분야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문적인 관심사는 물론 특별히 현실에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인권에 대해 법과 제도의 문제, 사회 문제, 정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거나 또 이 중 하나의 관점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 활동에 참여해오셨을 텐데 인권학회가 모든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요즘 말하는 통섭과 융합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 학문 분야간, 활동 분야간의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논의되어온 인권 문제가 주로 세분화된 권리, 소수집단의 권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위축 문제, 장애인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 등입니다.
 - 인권학회의 통섭과 융합의 노력은 이러한 주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학문 분야간 활동 분야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권학회가 이러한 개별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는 별도로 개별 문제를 이해하고 현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를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바랍니다.
 - 다시 말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책의 효과,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공동 연구가 출발점으로 가능
 - 예를 들어, 국제법의 실행 기제에 대해 법리와 원칙의 충돌과 조화,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효과가 어떠한가 혹은 어떠할 수 있는가의 비교 연구를 융합적 관점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더 구체적으로는 국제무역분쟁 해결절차의 개선을 효과성의 차원에서 연구해 왔듯이 국제적인 인권 감시 제도를 유엔시스템, 국제노동기구시스템, 유럽시스템이 가져온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법학적, 정치(사회)학적 연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융합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국내 인권의 문제도 제도 개선 효과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각 학문 분야의 연구 결과, 각 활동 분야의 실행 결과가 하나의 지혜로 합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

교집합

각합니다.

- 오늘 발표하신 서창록 교수님께서 수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회의에서 제기하시고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시려 애쓰시는 지역인권협력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난 50년 간의 유럽지역인권레짐이 부딪쳐온 법적, 정치적 문제는 무엇이었고 제도적인 변화가 가져온 실제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두 학문 분야가 제도의 효과성의 문제에 집중해 연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실, 법학적인 인권 연구, 사회학적 인권 연구가 얼마나 범위가 넓고 분야가 다양한지 모르면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지를 용서하시고 정치학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것을 원할 수 있구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권학회 1차 포럼 토론문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인권활동가는 무엇을 읽고 공부해왔는가?

2011.09.11

10월
1주

세 분 선생님의 발제문은 인권학의 형성과 발전, 과제에 대해 정리하셨습니다. 사회학이든 정치학이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에 제가 특별히 보탤 것은 없습니다. 저는 소위 '인권활동가'로 자기규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권피해자를 만나고 정치적 저항을 조직하고 시위하고 교육하고 공부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인권을 배우고 익혀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한국인권학회'의 구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 개인의 인권 공부의 내력이자 인권운동 동료들과 같이 한 공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부할 때마다 적절한 텍스트를 찾는 것이 심봉사 심청이 젖동냥 같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인권에 대해 알려면 무엇을 읽어야 하느냐 묻지만, 답이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인권학회'의 제 일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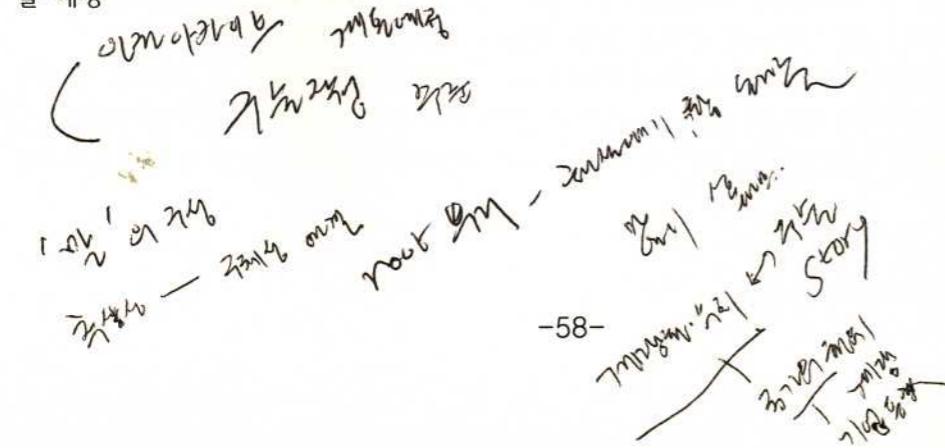
- 1992년: 세계인권선언(법무부 번역본)을 읽으며 조항별 토론. 아무런 참고서적 없었음.
-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참가단이 번역한 문서들, 참가경험 기록들: 국제인권규범체계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새로운 기구에 대한 인식에 눈 뜸: 이 시기 주요 세미나는 법률전문가(법학교수, 인권변호사)를 초청하여 관련 법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주를 이룸: 주 5일 발간하는 <인권하루소식>을 창간, 이후 13년 동안 발행하면서, 매일 글쓰기를 통한 공부, 텍스트보다는 글을 통한 토론에 의지한 공부
- 1994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최초의 정부보고서와 NGOs 보고서를 통한 국제인권규범 학습: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초청사업과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 초청 사업을 통해 '불처벌' 개념을 접하고 학습
- 1995-1996: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활동을 통해 아동인권/인권교육에 관한 국제문서들을 직접 번역하여 공부/20여개 아동관련 민간단체 세미나 모임을 조직하여 공동학습/청소년단체 인권교육 시작. 교육텍스트는 '유엔아동권리협약'
- 1996: 제 1회 인권영화제 개최하며 인종차별, 성소수자차별 등 새로운 인권이슈에 주목. '국가보안법' 중심의 사상·양심의 자유 공부에서 소수자 이슈로 관심 확장
- 1997: 유엔아동권리협약 해설서인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발간, 청송보호감호소 인권실태 폭로하며 <범죄와 처벌> <감시와 처벌> 등 공부, '감옥과 인권'관련 토론
- 1998: 사상전향제, 준법서약제 반대활동,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운동, 보안관찰법 피해자 실태조사, 전국 교도소 행형 실태조사 <한국 감옥의 현실> 출간,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인권유린 진상조사 활동,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 운동', 철거폭력용역업체 '직준개발'에 의한 철거민 인권유린 실태조사: IMF사태 이후 급격히 추락한 생존권 문제 조명: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개념 집중 공부: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활동(파리원칙 등 공부): '시민불복종' 개념 공부
- 1999: 사회권을 인권의제화한 <인간답게 살 권리> 발간, 지문날인 불복종 운동, 아동·청소년 교사 등을 참여자로 한 인권교육 경험을 담은 <인권교육길잡이> 발간
- 2000: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나라의 아동이 참여하여 만든 <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 Stand up for your rights> 번역·출간, 노동자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발간, 노조파업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과 폭력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인권과 노동권의

만남 시작: '노동권이란 무엇인가?'를 노동법 학습이 아닌 사회권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공부,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개소

- 2001-2006: 인권운동연구소 커리큘럼에 따른 학습, 주 내용은 인권의 역사, 세계 인권운동 동향, 인권의 논쟁점(가령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 등), 역사적 인권문헌연구 등
- 2007: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독립 <인권연구소 '창'> 설립

아래는 그간 '창'의 주요 공부 내용. '창'의 세미나는 인권활동가(일반시민교육이 아닌)를 주축으로 하므로 그간 인권활동가들의 공동 관심사를 상당 부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2007-2010: 연대(solidarity)에 대한 개념 공부, 권리논의에서 책임 부분은 왜 실종돼 있을까? '연대'는 '단결투쟁'으로만 등치되고 왜 한국사회에서는 '연대'라는 말을 쓰기 힘들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 신학, 정치학, 역사학, 여성학, 철학, 법학 전공자 및 노동운동, 풀뿌리 운동 활동가를 초청한 강좌 + 활동가 100인에 대한 연대의식 인터뷰 + 연대 개념 연구서적 번역세미나
- 2008: 세계인권선언을 20개 주제로 나누어 40회의 세미나: 기본 권리 개념+한국사회 현안을 결합
- 2009: 세미나를 통해 축적한 인권문헌연구를 모아 <인권을 외치다> 출간
- 2010: <흉악범죄 처벌강화'론'의 인권적 쟁점>에 관한 끝장토론회: 토요일 오전부터 밤까지 공식적으로만 9시간의 토론을 전개. 철학·여성학·법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와 활동가 40여 명이 참여하여 토론. 인권학 연구가 취해야 할 접근방식이라 평가
- 2009-2010: 철학과 인권 세미나: 바우만, 베틀러, 랑시에르, 푸코, 바디우, 아감벤, 발리바르, 아렌트, 벤야민 등의 텍스트를 전문 강사와 함께 읽음
- 2011: 문학과 인권(1부), 사랑과 인권(2부) 세미나: 카프카의 '법 앞에서', '심판', 헤르타 월러 '숨그네',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의 수십 권의 문학 텍스트를 읽음
- 2012: 연대(solidarity) 개념서 출간이 목적이었으나, 개념서가 아닌 에세이 형식이 전달력을 강하다는 의견으로 <사람인 까닭에> 출간
- 2012: 장소와 인권 세미나: 홈리스, 성소수자, 이주자 등과 '장소 상실'에 대한 공부
- 2013: '자유-안전-복지의 실태에 풀기' 워크샵: 자유권 따로 안전 담론 따로 사회권 담론 따로를 종합적으로 모아보자는 취지의 세미나와 워크샵 결합
- 2014-2015: 일터괴롭힘(workplace harassment) 연구: 직장괴롭힘으로 알려진 노동자 학대 현상에 대한 연구와 방지캠페인, 2016년 3월 현재 단행본 작업 중
- 2015: 감정의 정치학 세미나: 혐오·수치심·죄책감·공감·감정이입 등 한국사회를 강타하거나 결핍된 감정을 심리화하지 않고 정치적 국면으로 재구성하자는 취지의 세미나, 사라 아미드의 <감정의 정치학> 등을 매 회 번역해가며 공부
- 2016: 예정 세미나. <인권-미추(美醜)를 넘어서> 아름다움과 추함, 정상성과 비정상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 주요 텍스트는 푸코, 랑시에르에서 미학관련 논의, 감정(정동)을 다룬 것들 예정



"한국인권학회" 준비 제1차 포럼 토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제2세션 : '한국인권학회' 과제와 역할

1. 왜 '인권학회' 가 필요한가? 인권학회 구성의 의의?

- 인권위 출범, 법무부 인권국 설치, 인권시민사회의 확대/강화, 지자체 인권조례의 제정, 학생인권조례 제정, 글로벌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로스쿨 출범과 인권변호사군 확대 등 인권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연구/교육의 거점이 마련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

2. '인권학회' 의 역할과 과제는?

- 인권연구의 거점. 연구자 네트워크. 특히 그동안 '인권'이라는 틀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인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를 묶어낼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함.
- 인권에 대한 학제간 교류 증진.
- 인권 학문후속세대 발굴과 지원: 각 학문분야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인권 학문후속세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함.
- 인권 관련 활동가/공직자/실무가 등과의 교류: 다른 분과학문의 학계보다 접근성이 좋은 학회여야 하며, 실무에서의 성과와 문제의식이 연구에 반영될 수 있는 장이어야 함.

3. '인권학회' 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출범 및 구성에 대한 제안.

1) 유관 학회 현황

- 법(인권법학회), 복지(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인권의학연구소(의학/보건학), 여성(한국여성학회, 젠더법학회), 이주학(한국이민학회), 다문화학(한국다문화학회), 장애학(한국장애인학회, 한국장애인인권학회), 아동학(아동학회, 아동권리학회), 성소수자학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연구회[준]), 북한학(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회), 청소년(한국청소년학회), 인권교육학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등.

2) 연대/교류의 방법

- a) 우산학회(umbrella organization)과 개별학회의 병립

- 인권분야를 포괄/대표하는 학회와 개별분야의 학회가 병립하며, 대표학회 주도로 연례공동학술대회를 개최. 회원들은 대개 더블멤버쉽을 가지게 됨.
- 사례) 한국사회학회와 개별사회학회들; 한국행정학회와 개별행정학회들.

b) 개별학회들과 협의회(조직위원회)

- 개별학회가 각자 활동하면서, 1년에 한번 연례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
- 사례)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와 개별역사학회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회와 개별경제학회들

c) 통합학회와 소속 분과연구회

- 하나의 인권학회를 두고 그 소속으로 인권사회학연구분과, 인권법연구분과 등을 두는 방법.
- cf)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인권법학회’를 고려해야 함.

3) 인권학회의 세 가지 위상

- 인권을 주제로 한 모든 학문분과를 포괄하는 대표학회 (우산조직) e.g.) 인권학회 + 인권법학회, 인권사회학회, 인권정치학회 등
- 인권의 학문분과를 산하조직으로 둔 단일통합학회 e.g.) 인권학회와 산하에 인권법분과, 인권사회학분과, 인권정치학분과 등
- 사회학/정치학 위주의 인권학회지만, 편의상 인권학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향후 확대/발전 모색.

4. 구성하고 싶은 분과가 있다면?

기존의 연구학회가 없는 주제: e.g.) 북한인권

기존연구학회가 있지만 특정 학문분과가 주도해왔던 주제: e.g.) 어린이/청소년, 장애, 사회권

“한국인권학회” 준비 제1차 포럼 토론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제1세션: 한국 ‘인권학’의 현황과 과제

○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인권

- 인권개념/규범의 형성과 발전, 수용과 실천의 이해 (담론 분석, 역사연구)
역사적, 사회구성적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및 적용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자리잡고 있음. 국제인권법 문서를 변동하는 사회 현실, 새롭게 나타나는 인권 문제에 반응하며 발전하는 ‘살아있는 문서’라고 보는 것은 그러한 관점을 드러내 줌

- 인권의 침해/후퇴 혹은 증진의 사회구조적 요인 분석 / 인권기준 혹은 관점의 채택·적용이 긍정적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양적 질적 조사)
국가와 개인 간 공적 관계의 문제, 일국 내 문제에 한정된 것으로 여겨졌던 인권의 범위가 가정, 기업, 시장 영역, 초국경적 문제 등으로 확장되어 온 것은 인간 존엄이 무엇으로부터 위협받는가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보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음.

- 직접적 가해/피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사안의 경우 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로 논의가 집중됨. 다수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경우,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국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분석
인권이 개선되거나 후퇴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와 구조에 대한 분석은 인권 개선을 위한 효과적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인권의 토대가 되는 기본 가치와 함의에 대한 질문과 탐색 (철학 연구)
새로운 인권이 출현할 때, 인권들 사이에서 일견 충돌이 발생할 때 혹은 인권과 다른 가치/이익 간 경합이 발생할 때, 인권 규범 이전에 그러한 규범의 철학적 정당성과 여타 중요한 사회적 이익과의 관계를 질문하고

탐색하는 것은 필수적 과정임

“한국인권학회” 준비 제1차 포럼 토론

○ 도전과 과제

- 각기 다른 학문/실천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및 활동가), 각기 다른 용어, 이론적 접근의 사용, 소통의 어려움
- 한국사회와 세계 인권 현실을 반영하는 인권 연구의 자리 찾기: 실천적 함의를 사고하지 않는 연구, 선형적으로 규범적 답을 전제한 연구 양쪽을 넘어서기

제2세션 : ‘한국인권학회’ 과제와 역할

1. 왜 ‘인권학회’ 가 필요한가? 인권학회 구성의 의의?

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빈번하고, 사회의 각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인권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가기구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명목상 혹은 실제적으로 인권 관점을 반영하고 실천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음. 주로 법학에 한정되어 왔던 인권 연구와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

2. ‘인권학회’ 의 역할과 과제는?

- 인권연구자, 활동가 상호 교육과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
- 다학문, 간학문적 인권 연구의 촉진
- 인권 담론의 확산과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인권연구자 육성

신혜수, KOCUN 상임대표,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금년은 자유권, 사회권 양대 인권조약 채택 50주년 기념의 해
*현재 본인이 몸담고 있는 인권관련 활동 4가지:

- 강의: 이대 국제대학원, “여성과 인권”
- 인권NGO: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국제연대위원회 사무국 단장

제1세션 한국 ‘인권학’의 현황과 과제

- 세분의 발표자가 인권학의 발전과 현황, 다루어야 할 이슈를 전공별로 잘 짚어주었음.
- 현재 유엔 인권제도, 특히 사회권위원회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인권문제로 다음 몇 가지를 예로 들 수 있음.

-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근본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인권간의 충돌 현상: (예) 생명권(CPR) v.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CRPD); 여성의 낙태권(CEDAW) v. 장애인의 평등권(CRPD)
- 사회권보장에 있어서 최대 가용예산(maximum available resources)에 대한 논의, 즉 공공재정(public expenditure; public budget)과 인권보장의 관계, 조세제도, 부패, 국가재정의 투명성의 문제
- 국가의 의무에 있어서 영토밖의 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s)로 ODA, 국가연금의 투자, 기업활동 등과 인권침해, 인권영향분석 의무
- 비차별/평등권의 관점에서 난민, 무국적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인권보장의 정도는 어디까지가 의무인가?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천을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 법과 실제의 괴리, 불처벌, 문화적 전통의 지속;
- 인권NGO, 인권활동가(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한 박해와 탄압의 문제

- 국가의 인권보장책임은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의 책임,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책임: 이를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

“한국인권학회” 준비 제1차 포럼 토론

제2세션 : ‘한국인권학회’ 과제와 역할

정영선, 전북대 법전원

1. 왜 ‘인권학회’ 가 필요한가? 인권학회 구성의 의의?

- 인권에 관한 이론과 실천에서의 고민을 학문적으로, 실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제공
- 인권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와 양성

인권학과 인권학회, 독자성 확보의 가능성

2. ‘인권학회’ 의 역할과 과제는?

- 국내: ‘인권법학회’ 와의 차별성; 전공, 장소, 시대를 막론하고 포용
- 아시아지역: 주변국과의 학회차원의 교류와 자극; 아시아인권제도 수립의 가능성을 멀리 내다보고…
- 국제: 인권보호/침해의 사례에 대한 연구와 교류

3. ‘인권학회’ 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출범 및 구성에 대한 제안.

- 누가 회원이 될 것인가?: 회원의 다양성--연구자, 활동가, 국가인권위, ….
- 먼저 출범을 시키고 회원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준비모임을 몇 차례 더 가지면서 잠재적 회원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한 후 출범시킬 것인가?
- 기존 학회의 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 ‘인권학회’ v. ‘인권연구회’
- 이상과 현실 사이: 회지 발간, 등재, 운영의 문제

4. 구성하고 싶은 분과가 있다면?

-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이행
- 여성인권

1. 인권학의 범주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인권학이 어느 범주 까지를 포괄할 수 있을까? 인권학회를 만든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하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생존 가능한’ 학회로 남아있게 될까? 기존의 학문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까? “인권학은 종합 학문입니다, 모두들 인권학의 우산 아래로 모이세요” 라고 하면 구름떼처럼 몰려들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인권학의 영역은 여기서 요만큼이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오십시오” 라고 경계선을 치면 그 경계선에 모두들 동의할 수 있을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 인권 영역이 가지는 특수성(이데올로기 포함)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 인권학회 출범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들은 복잡한 생각들이다. 종합적인 또는 독립된 영역을 가지는 인권학의 영역을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인권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인권학이란 영역이 학문의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의 특질은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필자는 오늘 개최되는 인권학 준비 포럼에서 이상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스스로 답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권 관련 교과목에 대한 검토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학의 인권 관련 교과목이 해마다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방증 이외에 ‘인권학’ 이란 이름을 가진 학회가 출범해도 될 때가 이른 것이라는 신호탄일까?

2. 대학의 인권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있어서 인권 관련 교과목 운영 역사는 일천한 편이다.¹⁾ 물론 종래에 인권 대상별(예를 들면,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교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인권’ 이란 용어를 직접 넣은 교과목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 대학에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을 촉구한 것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 인권 선언 및 행동계획’ 정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명실 공히 ‘인권 관련 교과목’이 증설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부터 조사하여 발간한 ‘대학교 인권 교과목 실러버스 모음집’에서 보면 2002년 조사에서는 인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이 43개 대학(63개 과목) 정도였는데, 2012년 조사에서는 132개 대학(525개 교과목)으로 조사되고 있고, 개설 비율도 23%에서 43%로 높아져서 10여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²⁾

한편, 2014년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보고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인권 관련 교과목은 1000여 과목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인권 관련 교과목’을 학문영역별로 살펴볼 때, 여성 관련 226과목, 법·범죄 관련 218과목, 사회복지 관련 217 과목, 인권 일반·사회 관련 174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139과목, 평화·전쟁·정치 관련 109과목 순으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개설되어 있는 ‘인권 관련 교과목’을 대학/대학원별로 살펴보면 대학(학부과정) 835과목, 대학원(석·박사 과정) 248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대학은 ‘인권 관련 교과목’ 중 여성 관련 과목(24%), 대학원은 법·범죄 관련 과목(32%)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공별로 개설되어 있는 ‘인권 관련 교과목’은 사회계열 449과목, 법학계열 234과목, 교양

교과 231과목, 교육/사범계열 75과목, 기타 계열 34과목, 의약/간호계열 26과목, 인문계열 20과목, 예체능계열 7과목, 신학계열 4과목, 경영계열 3과목 등이다.

사회계열(41%)에서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비중이 가장 높고, 법학계열 및 교양 과목 분야에서 개설 비율이 비교적 높지만,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영역은 단지 사회과학 계열 분야뿐만 아니라 의약/간호 계열 및 예체능계열 까지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목의 이름도 다양하다. 인권이론은 물론, 인권과 기본권, 인권과 경찰(검찰, 군), 인권과 사회, 정보인권, 지적재산권, 국제인권과 평화, 인권과 여성(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족 등 소수자 인권), 인권과 생명 윤리, 인권과 환경, 인권과 노동, 의료와 인권,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학과 타 학문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암시하는 교과목 이름도 많다. 예를 들면, 인권과 법, 인권과 정치(또는 국제정치), 인권과 행정(경제, 사회복지 등), 인권과 과학 등이다.

3. 종합학문인 ‘인권학’의 독자성(?) 확보 가능성

앞에서 살펴 본 이 많은 인권 관련 교과목 영역을 ‘인권학’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낼 수 있을까? 인권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인권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즉, ’인권‘)에 입각하여 사회 제도와 사회 현실을 분석 비판하고, 인권의 보호와 그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의 한 영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고로 인권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법 영역의 규범체계를 연구하는 여타 법학(예컨대, 헌법, 행정법, 민사법, 형사법, 상법, 국제법 등)이나 사회 현상 및 제도를 탐구하는(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경제학 등) 일반 사회과학 또는 의학이나 공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의 영역에 구애됨이 없이 학문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문제를 연구하는 종합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권학이 독자성을 가진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수는 없는 걸까?

위에서 살펴본 인권학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인권학이 ‘독자적인 학문’의 위치에 서기가 어려울 거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법학 쪽에서도 헌법, 형사법 등에서 인권관련 분야를 다루

1) 인권교과목이란 대학에 개설된 교과과정 중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인권과 관련된 직무교육이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강의를 의미하며, 여기서 기술하는 ‘인권 관련 교과목’ 이라 함은 교과목 이름에 ‘인권’ 또는 ‘기본권’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별 현황, 인권 관련 문제 등을 다룬 과목들로 한정해서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 기준을 일단 준용해 본다.

2)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인권교과목 실러버스 모음집, 2013, p. 166.

고, 정치학 사회학에서도 인권 관련 주요 이론과 제도 등을 이미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학이란 원래 각각의 학문 영역의 인권적 측면을 말하는 것일 뿐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존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개진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겠지만, 인권학은 나름의 독자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인권학은 종합학문으로서 어떤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인권이란 시각에서 사회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제시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인권학의 영역은 ‘법학 차원의 인권적 해석’이나 ‘정치학 또는 사회학 차원의 인권적 해석’과 같이 개별학문 차원에서 인권을 분절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의 바라본 법학’*이나 *‘인권의 측면에서의 바라본 정치 현실 및 사회 현상’* 등과 같이 보편적 인권이란 통일된 잣대를 사용하여 여러 학문 영역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권학은 종합학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개별 학문의 한계를 넘어 모든 학문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영역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른바 인권의 ‘창’을 통해 다른 학문을 포섭한다고 할까? 아니 인권의 ‘그물’로 다른 학문의 ‘인권 영역’을 엮어낸다고 표현할까?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이제 출범을 준비하는 인권학회에서 그 방법론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권학회” 준비 제1차 포럼 토론

송지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제1세션 한국 ‘인권학’의 현황과 과제

1. 세 편의 발표문이 한국 인권 연구 역사와 현황, 그리고 인권 사회학과 인권 정치학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됐음.
2. 발표문과 인권학 관련 강의와 학회를 경험하며 느낀 바에 비춰볼 때, 다음 시도가 흥미롭고 적절하다고 봄:
 - (i) 철학, 정치사상과 사회사상, 비판 이론 등 규범적 또는 이론적 연구와 (ii) 질적 또는 계량적 경험 연구 사이 대화.
 - 2) 조효제 선생님 제안처럼 “민주적으로 집권했지만 권위주의적 경향을 지닌 정권 하에서 기본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터키, 폴란드, 이스라엘, 북아일랜드” 등의 인권학 공동체와의 교류.
 - 3) (i) 현장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쟁점에 발맞춰 일하는 활동가와 (ii) 통상 그보다 조금 더디게, 그리고 그러므로 이상적으로는 더 세밀하게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 사이 대화. (예를 들어 활동가가 자신의 현재 프로젝트를 소개한 후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브레인스토밍하는 워크숍이 있다면, 서로의 상상력을 넓히는 데 도움될 듯함.)

제2세션 : ‘한국인권학회’ 과제와 역할

1. 왜 ‘인권학회’ 가 필요한가? 인권학회 구성의 의의?
 - 1) 다양한 분과 학문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생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인권학회’ 의 역할과 과제는?
 - 1) 소모적 분과 영역주의(territorialism)를 경계하며 국내 인권 연구 및 활동가 공동체들과의 선의의 협력과 교류 모색.
 - 2) (잠재적) 학문 및 활동 후속 세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 공간, 기회, 계기 제공.
 - a. 1)은 2)를 위해서도 중요함.

3) 유관 국외/지역 학회와 교류.

3. '인권학회'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출범 및 구성에 대한 제안.

- 1) 위 2.1)을 위해 유관 학회와 연간 또는 격년으로 공동 학술대회 개최.
- 2) 학문 및 활동 후속 세대가 진행 중인 연구나 기획(work in progress)을 발표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계기—예를 들어 워크숍 시리즈—제공.
 - a. 개별 대학 내 연구포럼과의 공동주최 등 모색.

4. 구성하고 싶은 분과가 있다면?

- 1) 인권철학(philosophy of human rights) 또는 인권이론(human rights theory)
- 2) 인권센터/인권 클리닉 등 대학 내 또는 대학 간 인권교육 관련 분과

